

2019 조세수첩



CONTENTS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01 조세개요

01. 조세체계	18
02. 조세의 분류	19
03. 조세체계의 변천	20
04. 조세수입	24
05. 조세부담률	25
06. 국제비교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26
07. 국제비교 : 세제별 세수비중 등	32
08. 국제비교 : 지방세 비중 등	34

02 국세

09. 국세체계	38
10. 주요 세제별 변천	39
11. 국세수입	42

< 소득세 >

12. 소득세 과세체계	46
13.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48
14. 소득세 세율	50
15. 소득세수 현황	51
16. 소득세 과세 현황	52
17.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54
18. 국제비교 : 소득세 과표구간수	57
19. 국제비교 : 소득세 최고세율	58
20. 국제비교 : 소득세 부담	63
21. 소득세 개정 동향	64

< 법인세 >

22. 법인세 과세체계	74
23. 법인세 과세대상	75
24. 법인세 최저한세	76
25.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77
26. 법인세수 현황	78
27. 신고법인수 추이	79
28. 법인세 과세 현황	80
29. 법인세 과세 현황 : 기업규모별	82
30. 법인세 과세 현황 : 과표구간별	83
31.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84
32.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86
33.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	87
34.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	88
35.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	93
36.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94

< 부가가치세 >

37.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98
38. 영세율, 면세	100
39. 부가가치세 현황	102
40. 국제비교 : 부가가치세율	104
41. 국제비교 : 경감세율	107
42. 국제비교 :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108
43. 국제비교 : 부가가치세 부담	109
44.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110

< 상속세·증여세 >

45. 상속세 과세체계	114
46. 증여세 과세체계	116

CONTENTS

47. 상속·증여세 현황	118
48. 상속·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120
49. 국제비교 : 상속·증여세 부담	121
50. 국제비교 : 상속·증여세제	122
51. 상속·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	124

< 기타세목 >

52. 개별소비세	128
53. 주세	130
54. 교통·에너지·환경세	131
55. 종합부동산세	132
56. 증권거래세	134
57. 인지세	135
58. 교육세	136
59. 농어촌특별세	137
60. 관세	138

03 지방세

61. 지방세체계	140
62. 지방세제의 변천	141
63.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142
64. 지방세 수입	144
65. 2017년 시도별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146

< 지방세목 >

66. 취득세	150
67. 지방소득세	151
68. 재산세	152

69. 자동차세	154
70. 지방소비세	156
71. 담배소비세	157
72. 지방교육세	158
73. 등록면허세	159
74. 주민세	160
75. 지역자원시설세	161
76. 레저세	162

04 조세특례

77. 국세감면 현황	164
78. 국세 세목별 조세특례	165
79. 예산분류별 조세특례	168
80. 조세특례평가제도	170
81. 조세지출 관리규정	172
82.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173
83. 주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175
84.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176
85. 지방세 감면 관리 규정	177

<「조세특례제한법」상 2019년 일몰도래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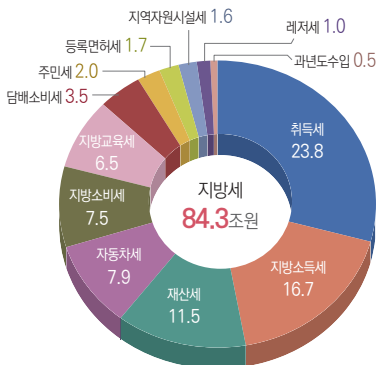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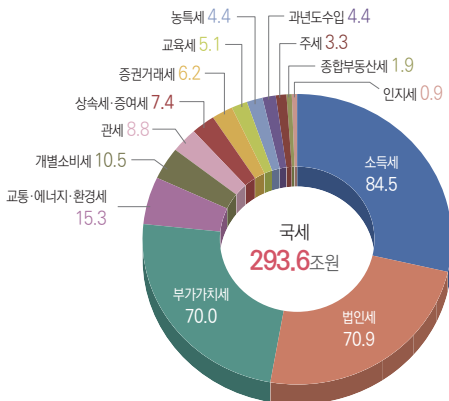
86. 2019년 일몰도래 항목	180
-------------------	-----

< 부록 >

조세용어 해설	19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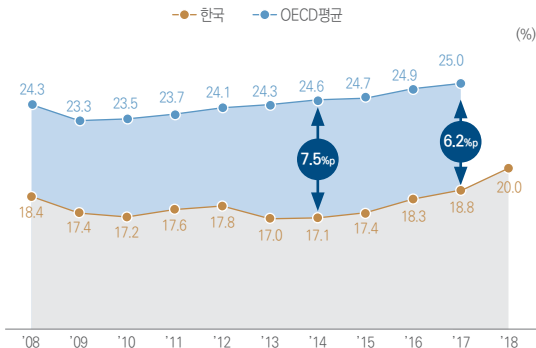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조세수입 현황(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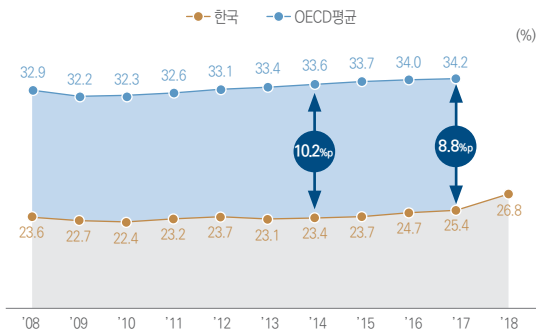


조세·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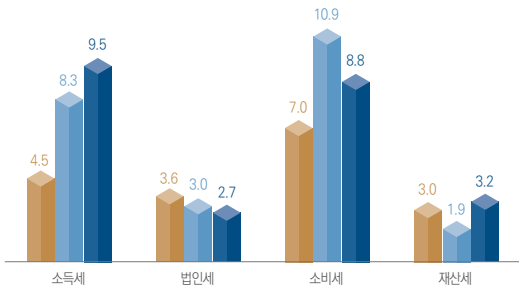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SNA 2015년 기준 경상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조세 비중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2017년)

■ 한국 ■ OECD평균 ■ G7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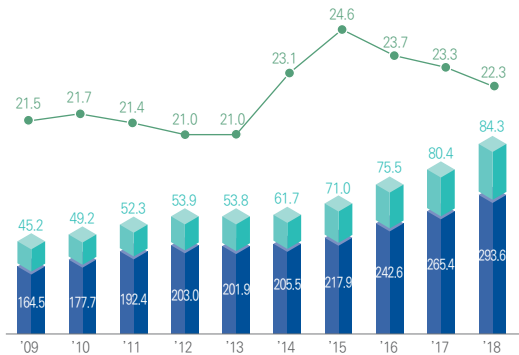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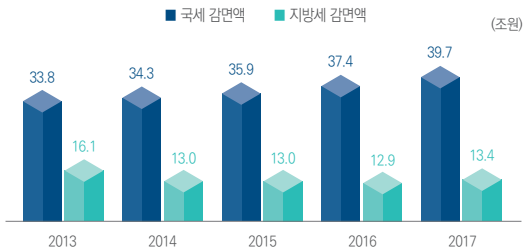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 국세 ■ 지방세 ● 지방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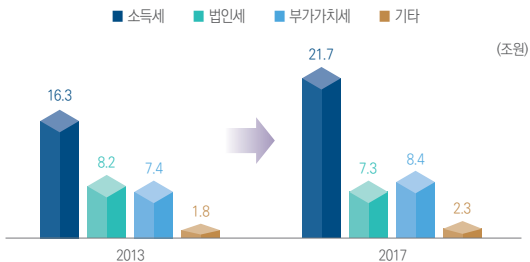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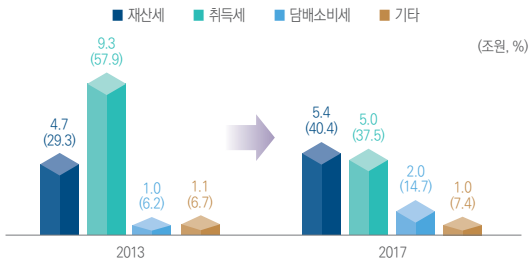
국세·지방세 감면액



국세 감면액(세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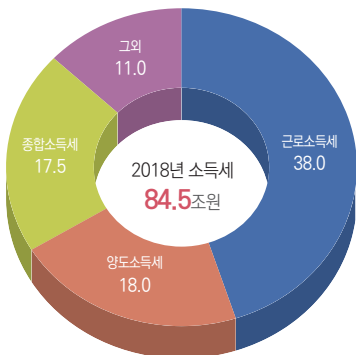


지방세 감면액(세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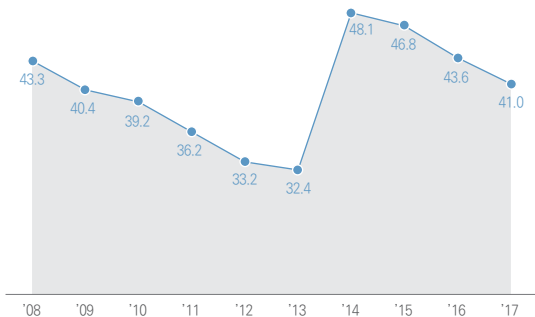
소득세 세입 및 면세자 비율

소득별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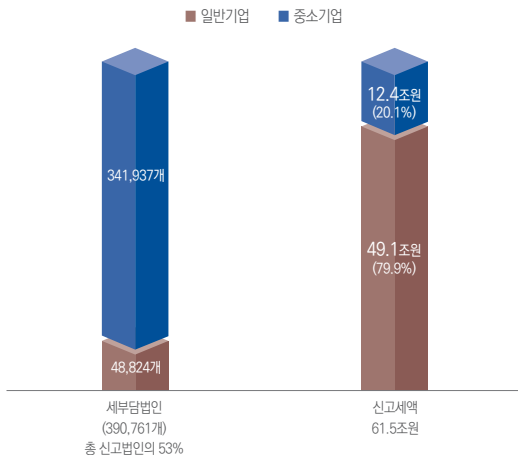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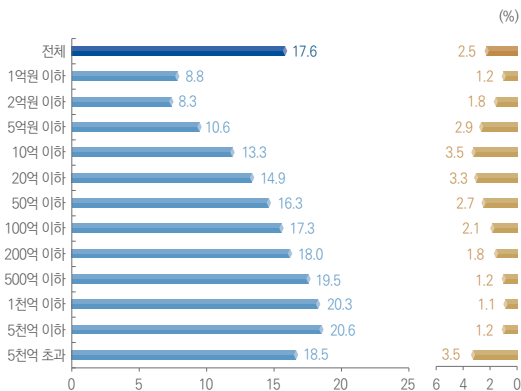


법인세 세부담 구조(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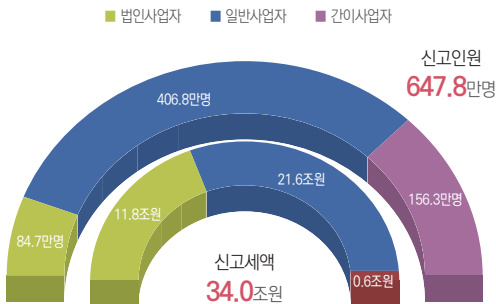
평균실효세율 (국내 총부담세액/과표)

평균감면비율 (공제감면액/과표)



부가가치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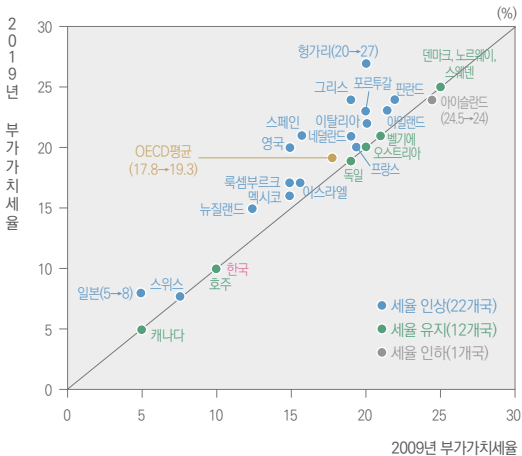
부가가치세 부담 현황



※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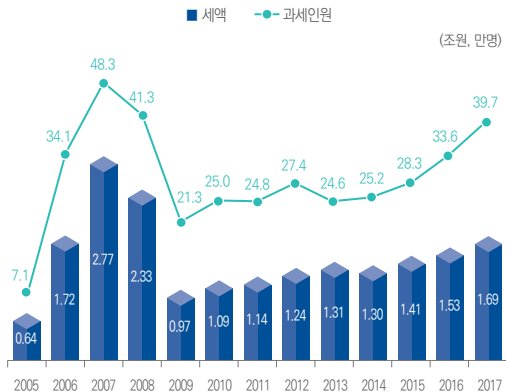
신고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OECD국가들의 세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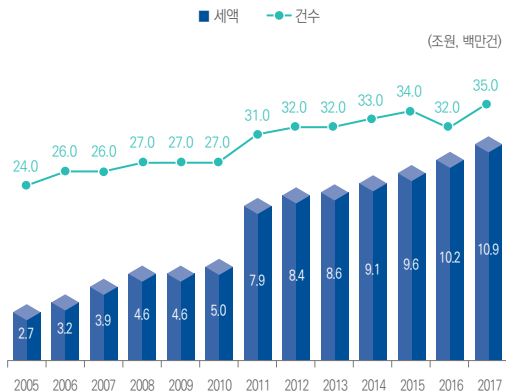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결정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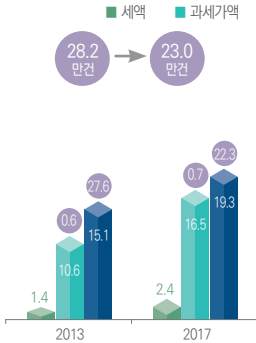


재산세 과세건수 및 부과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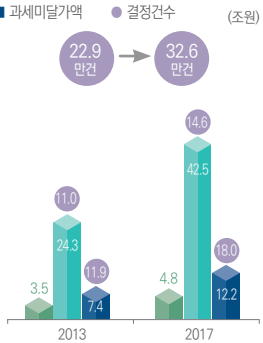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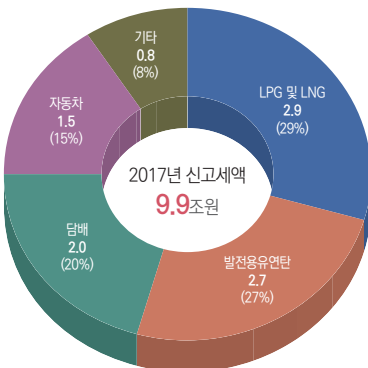
상속재산과 상속세 징수추이
(2013 VS 2017)



증여재산과 증여세 징수추이
(2013 V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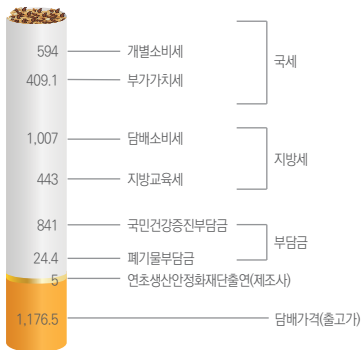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신고세액



담배의 조세부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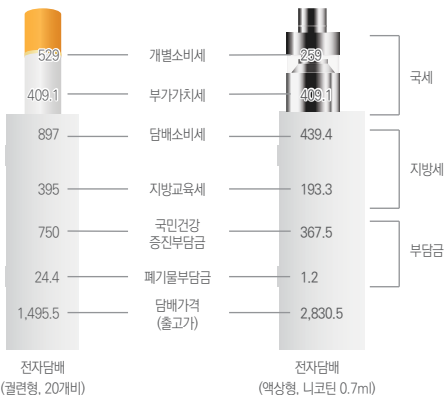
일반담배(궐련)

(원)



전자담배

(원)



유류(휘발유·경유)의 조세부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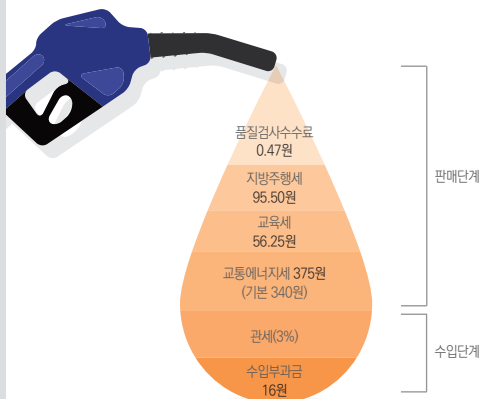
휘발유

(원/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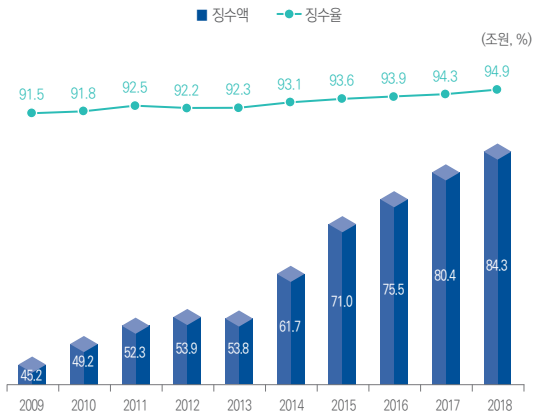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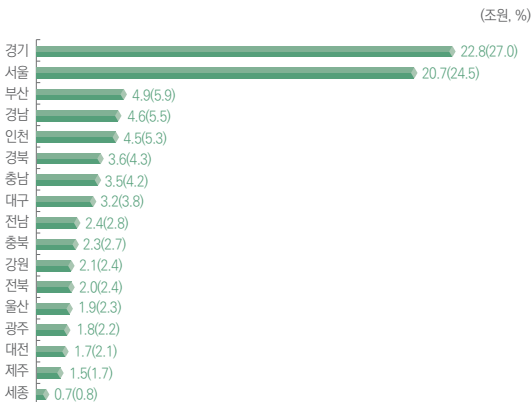
(원/ℓ)



지방세 징수액 추이



시도별 지방세 징수액(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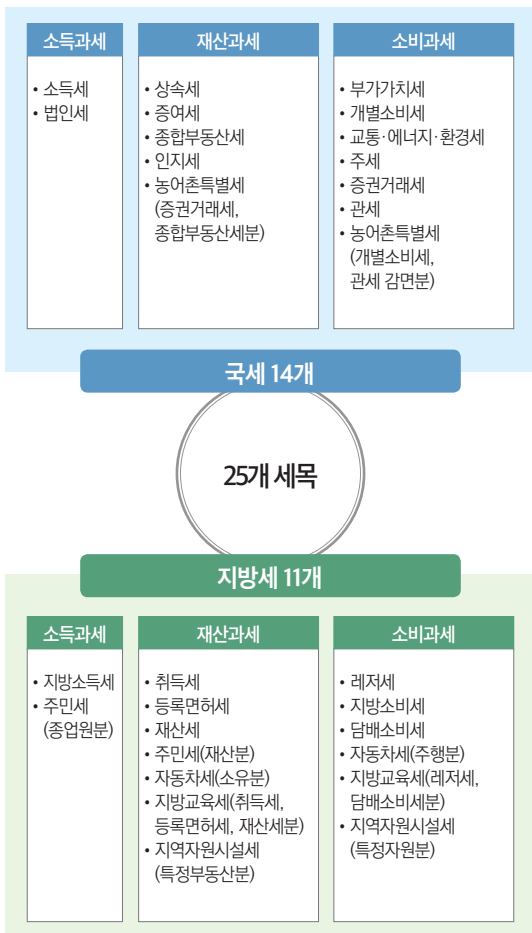


Part 1

조세개요



01 조세체계



02 조세의 분류

구분	내용
국세와 지방세	과세권 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 : 중앙정부 - 지방세 : 지방정부
내국세와 관세	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 국경 내의 거래인지에 따른 분류 - 내국세 : 국경 내 거래 - 관세 : 국경을 통한 거래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전가의 예정유무에 따른 분류 - 직접세 : 조세부담자 = 납세의무자(소득세, 법인세 등) - 간접세 : 조세부담자 ≠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인세와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지에 따른 분류 - 인세 : 소득세 - 물세 : 소비세, 재산세 등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회계 세원 - 목적세 : 특별회계 세원(예: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단위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화폐단위로 측정 - 종량세 : 종량, 용량, 건수, 인원 등 [예: 주세의 주정(kℓ), 개별소비세 경마장 입장행위(1인1회 입장시)]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된 세원의 존재여부에 따른 분류 - 부가세 :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03 조세체계의 변천

● 정부수립기(1948~1960년)

- 정부수립 이후 총 45개 세목으로 새롭게 출범한 조세제도는 전후복구기 재정수입 증대 목적의 세제개편 단행

국 세 체 계	한국전쟁 직전(1950)	전후복구기(1958년)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수익세제: 지세, 영업세, 광세 재산세제: 상속세, 증여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청량음료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직물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관세 기타: 인지세, 톨세, 마권세, 면허세	• 직접세 소득(수익)세제: 소득세, 법인세 수익세제: 영업세 재산세제: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자동차세, 등록세(한국전쟁), 광세, 토지소득세(한국전쟁) 특별소득세: 임시외환특별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통행세, 관세 기타: 교육세, 마권세, 톨세

지 방 세 체 계	한국전쟁 직전(1949년 지방세법 제정)	전후복구기(1958)
	• 도세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입정세 • 사·음·면세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독립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축건세, 선세, 교통세 • 목적세 서울특별시세: 교육구교육세: 초등교육세(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지방자치단체: 필요성 인정시 목적세 부과	• 도세 국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호별세, 가옥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취득세, 차량세, 특별행위세, 동력세, 면허세(1954년), 선세 • 사·음·면세 국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도세부가세: 도의 11개 독립세목 전체에 대한 부가세 • 목적세 교육세: 초등교육세(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기타목적세: 동세, 리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경제개발기(1961~1980년)

- 경제개발기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수단 기능강화 및 세제 간소화로 현행 조세체계의 기본구조 완성

국 세 체 계	1967년 세제개편	1976년 세제개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등록세, 부동산투기억제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물품세, 통행세, 입장세, 영업세, 전기가스세, 관세, 석유류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기타: 톤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1974년) • 간접세 소비세: 주세, 전화세(1974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 목적세 방위세(1975년)
지 방 세 체 계	1967년 지방세제개편	1976년 지방세제개편
	• 도세 독립세: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 서울특별시세, 부산시세 독립세: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재산세, 농지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시·군세 도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면허세부가세 독립세: 재산세, 농지세 • 목적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도세 독립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서울특별시세, 부산시세 독립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시·군세 독립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 목적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개방경제기 (1981~2000년)

- 개방경제가 조세체계의 큰 변화없이 WTO 가입 등 개방경제기의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부 세목 신설(농어촌특별세 등)

국 세 체 계	1981년 세제개편	1994년 세제개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1978년 재도입) • 목적세 방위세, 교육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지 방 세 체 계	1984년 지방세 개정	1990년 지방세제개편
	•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특별시세·직할시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판매세 • 목적세 특별시세·직할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 특별시세·직할시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자치구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목적세 특별시세·직할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자치구세: 사업소세

● 외환위기 이후(2001~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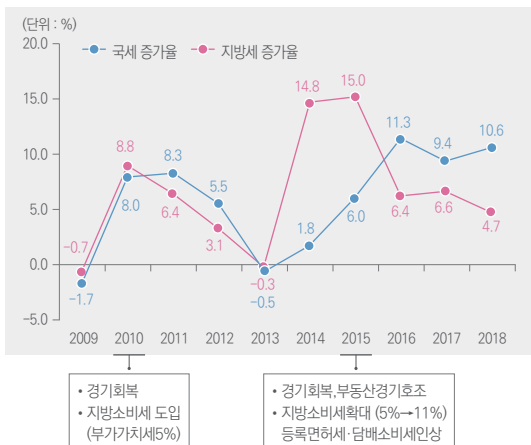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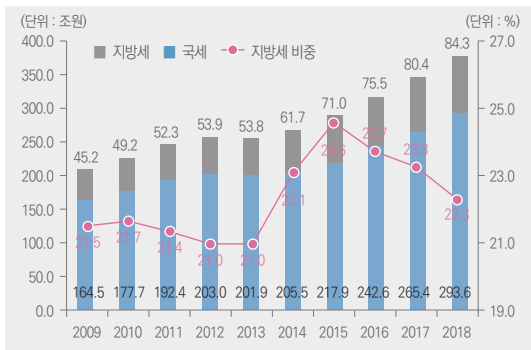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소득재분배 조세정책에 맞는 세목별 개편(EITC도입)과 부동산보유세제 강화(종합부동산세 신설)

국 세 체 계	2005년 세제개편	2008년 세제개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 직접세 소득세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 방 세 체 계	2001년 지방세제개편	2010년말 지방세제개편
	•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 특별시세·광역시세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 자치구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목적세 도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2000) 특별시세·광역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자치구세: 사업소세	•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특별시세·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주행세 흡수) •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주행세 흡수)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재산세(서울시와 공동과세) • 목적세 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특별시세·광역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 조세수입

● 2018년 총조세는 377.9조원

- 총조세 : ('09년) 209.7조원 → ('18년) 377.9조원
- 총조세 대비 지방세수입 비중 : ('09년) 21.5% → ('18년) 22.3%



05 조세부담률

● 2018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1.2%p 상승(18.8%→20.0%)

• 국민부담률(잠정)은 전년 대비 1.4%p 상승(25.4%→26.8%)

▶ 조세부담률(%) = 총조세(국세+지방세)/명목GDP×100

국민부담률(%) = (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100

(단위 :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부담률	지방세부담률
2009	17.4 [22.7]	13.7	3.7
2010	17.2 [22.4]	13.4	3.7
2011	17.6 [23.2]	13.9	3.8
2012	17.8 [23.7]	14.1	3.7
2013	17.0 [23.1]	13.5	3.6
2014	17.1 [23.4]	13.1	3.9
2015	17.4 [23.7]	13.1	4.3
2016	18.3 [24.7]	13.9	4.3
2017	18.8 [25.4]	14.5	4.4
2018	20.0 [26.8]	15.5	4.5

주 :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06 국제비교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2017년 우리나라 18.8%,
OECD 25.0%, G7 25.1%

• 국민부담률, 2017년 우리나라 25.4%, OECD 34.2%, G7 35.6%

(단위 : %, %p)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국민부담률)	18.4	17.4	17.2	17.6	17.8
	(23.6)	(22.7)	(22.4)	(23.2)	(23.7)
OECD평균 (국민부담률)	24.3	23.3	23.5	23.7	24.1
	(32.9)	(32.2)	(32.3)	(32.6)	(33.1)
G7평균 (국민부담률)	23.8	23.0	23.1	23.7	24.2
	(33.7)	(33.2)	(33.2)	(33.8)	(34.4)
미국	19.4	16.8	17.4	18.4	18.6
일본	16.8	15.3	15.6	16.1	16.5
영국	26.1	25.1	26.2	27.0	26.2
프랑스	26.6	25.3	26.0	27.1	27.9
독일	22.5	22.2	21.3	21.9	22.5
이탈리아	28.8	28.9	28.8	29.0	30.8
캐나다	26.8	27.6	26.5	26.3	26.5

주 : 1. 호주, 일본은 자료 미발표로 2017년 대신 2016년 값 적용

2.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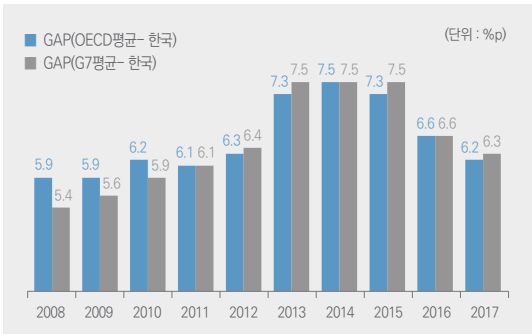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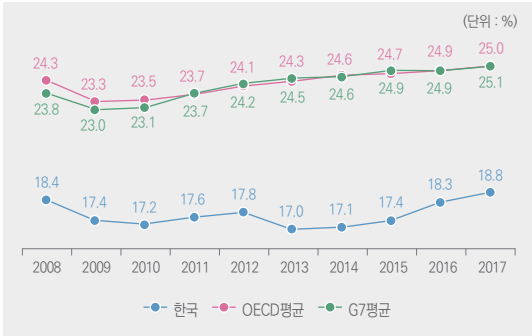
자료 : OECD Tax Database

(단위 : %, %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08
17.0	17.1	17.4	18.3	18.8	0.4
(23.1)	(23.4)	(23.7)	(24.7)	(25.4)	(1.8)
24.3	24.6	24.7	24.9	25.0	0.7
(33.4)	(33.6)	(33.7)	(34.0)	(34.2)	(1.3)
24.5	24.6	24.9	24.9	25.1	1.3
(34.9)	(35.0)	(35.3)	(35.3)	(35.6)	(1.9)
19.5	19.8	20.0	19.7	20.9	1.5
17.1	18.3	18.6	18.2	18.2	1.4
26.2	25.9	26.1	26.5	26.9	0.8
28.6	28.5	28.6	28.8	29.4	2.8
22.9	22.8	23.1	23.4	23.3	0.8
30.9	30.5	30.1	29.8	29.5	0.7
26.4	26.6	27.8	27.9	27.6	0.8

● 조세부담률 비교 : 한국 vs. OECD vs. G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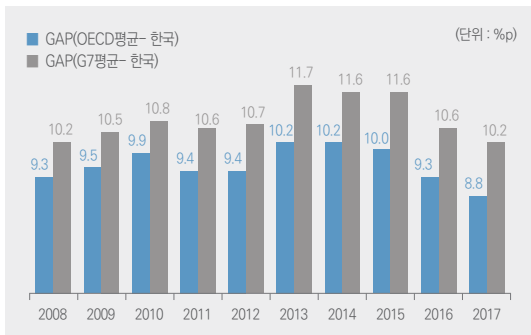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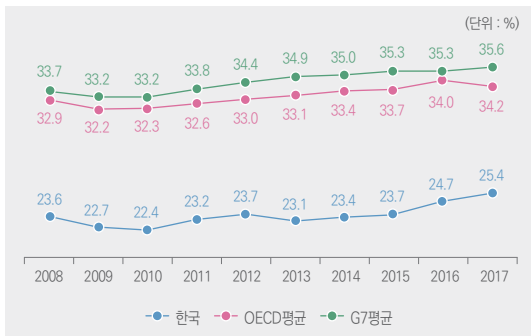
- OECD 평균과의 격차 : '08년 5.9%p → '17년 6.2%p
- G7 평균과의 격차 : '08년 5.4%p → '17년 6.3%p



주 : 1. 호주, 일본은 자료 미발표로 2017년 대신 2016년 값 적용
 2.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 OECD Tax Database

● 국민부담률 비교 : 한국 vs. OECD vs. G7

- OECD 평균과의 격차 : '08년 9.3%p → '17년 8.8%p
- G7 평균과의 격차 : '08년 10.2%p → '17년 10.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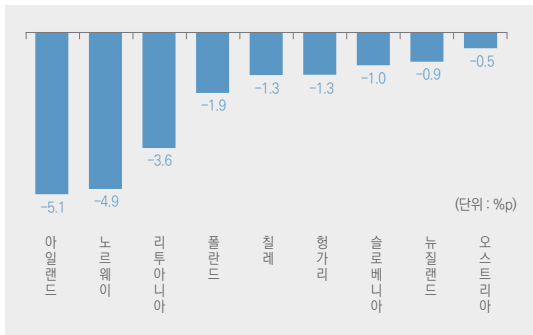


주 : 1. 호주, 일본은 자료 미발표로 2017년 대신 2016년 값 적용
 2.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 OECD Tax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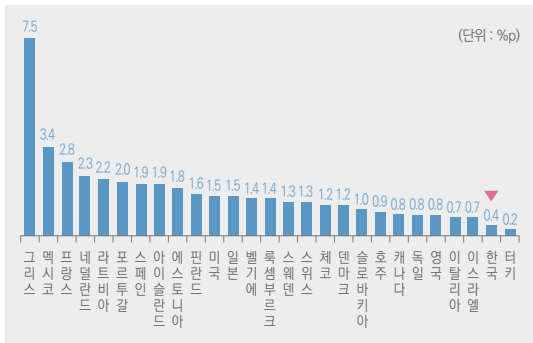
●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변화 : 2008년 vs. 2017년

• 하락 : 9개국, 상승 27개국

▶ 하락 9개국 :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칠레 등



▶ 상승 27개국 : 그리스, 멕시코,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 : 1. 호주, 일본은 자료 미발표로 2017년 대신 2016년 값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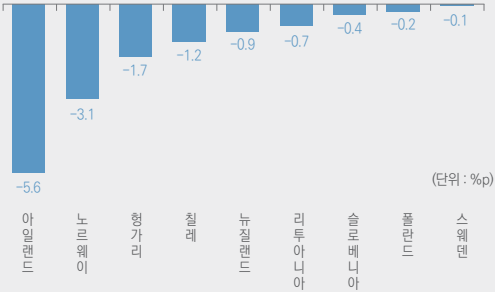
2.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 OECD Tax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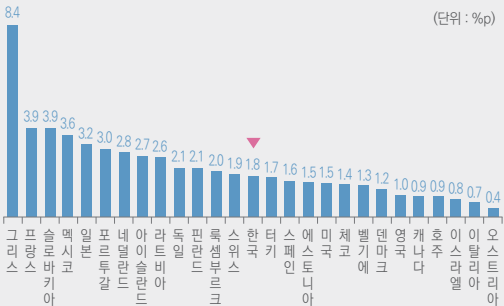
●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변화 : 2008년 vs. 2017년

• 하락 9개국, 상승 27개국

▶ 하락 9개국 : 아일랜드, 노르웨이, 칠레, 뉴질랜드 등



▶ 상승 27개국 : 그리스,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주 : 1. 호주, 일본은 자료 미발표로 2017년 대신 2016년 값 적용

2.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 OECD Tax Database

07 국제비교 : 세제별 세수비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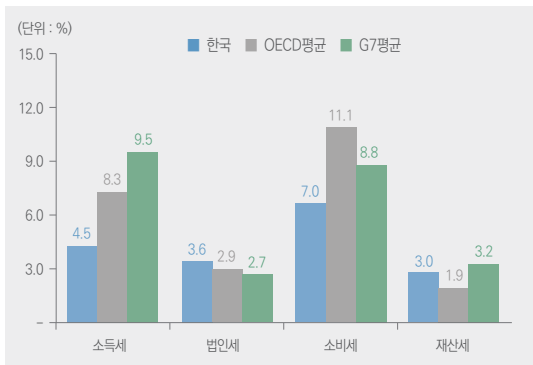
● 명목GDP 대비 세제별 세수비중

-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음

<2017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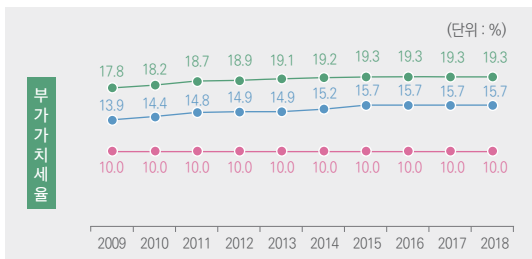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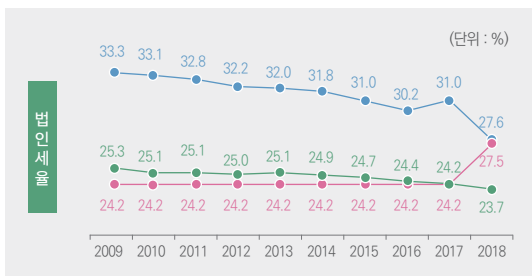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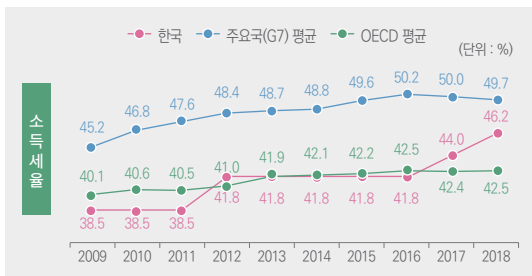
	한국	OECD평균	G7평균
소득세	4.5	8.3	9.5
법인세	3.6	2.9	2.7
소비세	7.0	11.1	8.8
재산세	3.0	1.9	3.2
기타	0.6	0.2	0.4



주 :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 주요 세목 세율 추이



주 :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방세등 포함 최고세율,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임
 자료 : OECD Tax Database

08 국제비교 : 지방세 비중 등

● 총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는 자주재정권이 강한 측면이 있어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연방제 국가는 낮은 모습

※ 단, 지방이전재원 고려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다름

• 연방제 국가(9개국)

(단위 : %)

	미국	독일	평균
국세	55.4	48.0	66.7
지방세	44.6	52.0	33.3

주 : 2016년 기준값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비연방제 국가(27개국)

(단위 : %)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평균
국세	94.0	71.2	59.9	76.3	85.2
지방세	6.0	28.8	40.1	23.7	14.8

주 : 2016년 기준값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국의 특징적인 지방세 세목

미국	• 관광·숙박세 • 렌트카세 • 보험(영업)세(뉴욕주) • 자동차등록 부가세(뉴욕주) • 고속도로 사용세(뉴욕주) • 오염세(미네소타주)
독일	• 견세 • 유흥장세 • 사냥 및 낚시세 • 음료수세 • 야영장세 : 장기캠핑자 • 말의 보유 과세 • 숙박세(베를린, 함부르크)
프랑스	• 건축물 없는 토지의 토지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 기업 토지 부담금 부가세 • 청소세 : 도로 연변의 건물 소유자 • 공가세 : 거주기간 30일 이내로 2년 이상 빈 집 • 여행세 : 관광객에 부과, 파리는 10%의 데파르트망세 부과
일본	• 자동차 종량세 • 항공기 연료세 • 전원개발촉진세 • 석유석탄세 • 숙박세 • 낚시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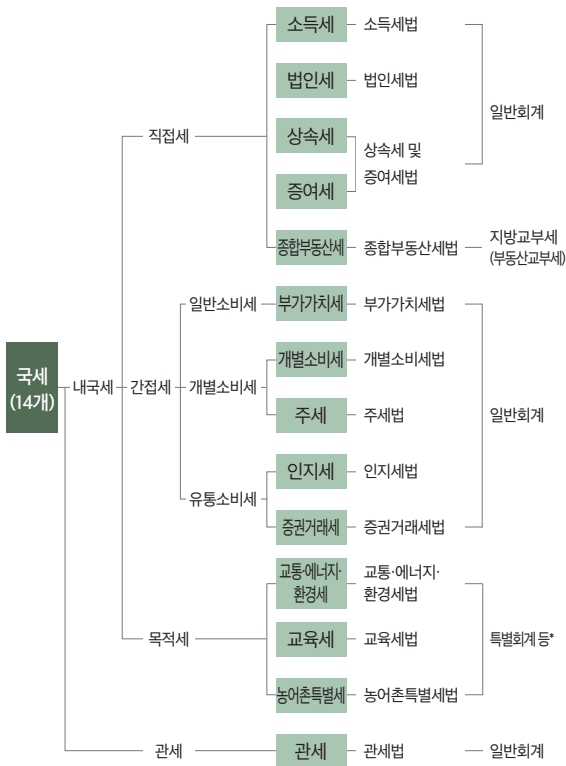
Part 2

국세



09 국세체계

● 총 14개 세목 : 1세목 1세법



* 특별회계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 교육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해당 연도 예산기준, 2019년까지)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 주요 세제별 변천

● 소득세제

- 공평과세 실현(종합과세제도 도입)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2008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에 맞춰 시기별로 변화

50~60년대	1949	소득세법 제정 : 불완전 종합소득 과세	
70~80년대	1974	종합과세제도 재도입 (8~70%, 16단계 초과 누진세율)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90년대	1994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최고세율 인하(40%) 과표구간 4단계로 축소	
2000년 이후	2008	근로장려세제도입(EITC)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2014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법인세제

- 1949년 독립세목화 된 이후 산업지원 정책수단(임시투자세액공제)으로의 기능과 경제구조변화(고용증대세제)에 따라 변천

50~60년대	1949	법인세법 제정 : 소득세에서 분리	
70~80년대	197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1960년대 이후 산업지원 정책수단(조세지원)의 기능 강화
90년대	1991	최저한세 도입, 적정유보초과소득세 도입 (2002년 폐지)	최소한의 조세부담
2000년 이후	2007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2015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2018	법인세율 인상 / 고용증대세제 신설	

● 소비세제

- 개별소비세제 체계를 유지해 오다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 등 소비세제 간소화 이후 과세체계상 큰 변화 없이 과세합리화(과세특례제도 폐지)를 위한 개편 중심으로 변천

50~60년대	1961	영업세	전면개편(기존 32개 업종을 18개 업종으로 단순화)
		물품세	소매과세와 특별과세물품세 폐지 - 제조장반출과세
70~80년대	197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정(1977년 시행)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소비세제 간소화
	1994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 신설
90년대	199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도입(기준금액 1억 5천만원)
	2000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2000년 이후		주세	증류주 세율 72%로 통일, 맥주 세율 72%(종전150%)
	201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전면개정(알기 쉬운 법령정비 일환)
	2014	개별소비세	담배를 과세대상에 포함

● 재산세제

- 경제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맞춰(부동산투기억제세,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변천

	1951	1977	1989	2018		
	전시세제 (조세특례제한법) 도입	1세대 1주택 가운데 고급주택 과세로 전환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신설	다주택자 종가세 재도입		
	50~60년대		70~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1950 상속세법 제정 증여세법 제정	1980 포괄주의 과세폐지, 열거주의 도입		2004 원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201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2017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10%>7%>5%>3%)
종합 부동산세				2005 종합 부동산세 시행	2008 인별 한산으로 전환, 1세대 1주택 과세기준액 8억원>9억원, 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 300%>150%	2018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다주택자 중심 세율 인상

● 국세 세목 변천

	'70	'78	'79	'82	'91	'94	'99	'01	'02	'03	'04	'05	'08 이후
자산재평가세	'49 →	→	→	→	→	→	→	폐지					
부당이득세	'49 →	→	→	→	→	→	→	→	→	→	→	→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49 →	→	→	→	→	→	폐지						
증권거래세			도입	→	→	→	→	→	→	→	→	→	→
전화세	'74 →	→	→	→	→	→	→	→	부가가치세에 통합				
물품세	'49 →	폐지											
통행세	'49 →	폐지											
입장세	'49 →	폐지											
전기가스세	'49 →	폐지											
영업세	'49 →	폐지											
석유류세	'49 →	폐지											
방위세	'75 →	→	→	→	폐지								
교육세				도입	→	→	→	→	→	→	→	→	→
교통세						도입	→	→	→	→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변경		
농어촌특별세						도입	→	→	→	→	→	→	→
종합부동산세						도입	→	→	→	→	→	→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제사』, 2012.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11 국세수입

- 2018년 국세수입은 293.6조원으로, 2017년 대비 28.2조원 (10.6%) 증가

(단위 :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세	164.5 [-1.7]	177.7 [8.0]	192.4 [8.3]	203.0 [5.5]	201.9 [-0.5]	205.5 [1.8]
소득세	34.4	37.5	42.3	45.8	47.8	53.3
법인세	35.3	37.3	44.9	45.9	43.9	42.7
상속·증여세	2.4	3.1	3.3	4.0	4.3	4.6
부가가치세	47.0	49.1	51.9	55.7	56.0	57.1
개별소비세	3.6	5.1	5.5	5.3	5.5	5.6
교통·에너지 ·환경세	10.1	14.0	11.5	13.8	13.2	13.4
관세	9.2	10.7	11.0	9.8	10.6	8.7
종합부동산세	1.2	1.0	1.1	1.1	1.2	1.3
주세	2.8	2.9	2.5	3.0	2.9	2.9
기타	18.6	17.2	18.3	18.5	16.5	15.8

주 : 1) []는 전년대비 증가율, ()는 전체 국세대비 비중임

2) 2009~2018년은 실적치, 2019년은 예산 기준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기획재정부 발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2019. 2. 8.)

(단위 : 조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217.9 [6.0]	242.6 [11.3]	265.4 [9.4]	293.6 [10.6]	(100.0)	294.8
60.7	68.5	75.1	84.5	(28.8)	80.4
45.0	52.1	59.2	70.9	(24.2)	79.3
5.0	5.4	6.8	7.4	(2.5)	7.2
54.2	61.8	67.1	70.0	(23.8)	68.8
8.0	8.9	9.9	10.5	(3.6)	10.3
14.1	15.3	15.6	15.3	(5.2)	14.8
8.5	8.0	8.5	8.8	(3.0)	9.1
1.4	1.3	1.7	1.9	(0.6)	2.8
3.2	3.2	3.0	3.3	(1.1)	3.4
17.8	18.1	18.6	21.1	(7.2)	18.8

Part 2

국 세

소득세



12 소득세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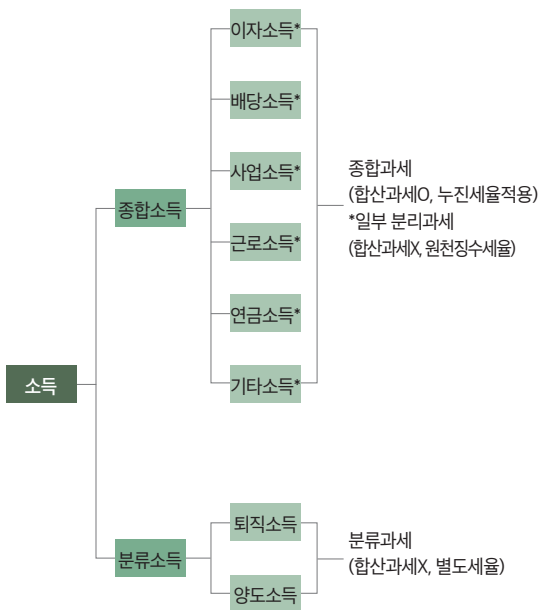
● 소득세법상 열거된 사업·근로·이자등 8가지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류과세

• 종합과세 : 과세기간 중 발생소득을 합산, 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 : 일부 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로 납세종결

- ①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4% ②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4%
- ③ 의료목적등연금소득 3~5% ④ 복권당첨금등 20%/30% 등

• 분류과세 : 소득이 장기간 집적·형성된 점을 감안, 별도 과세



주 :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참조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도출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

• 결정세액 = 과세표준×소득세율-(세액공제+세액감면)

종합소득금액 ¹⁾	퇴직소득금액 ²⁾	양도소득금액 ³⁾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⁴⁾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⁵⁾ 적용)	× 양도소득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표준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감면
= 종합소득 결정세액	= 퇴직소득 결정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주 :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 공제를 제외)

2)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3)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

4)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배수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도출

5)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환산배수(12배)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참조

13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 소득공제

- 단,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조특법 제132조의2)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 공제(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상 기여금 및 개인부담금(전액)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공제	• 연금소득자만 해당(이자비용 상당액, 200만원내)
특별공제	•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 • 주택자금공제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근로자, 40%)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1주택 근로자) 등 * 단,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①,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①+②, 500만원
조특법상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4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차감 후 15~40% 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한도 : 총급여 수준별 연 200~300만원(단,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 4천만원/1억원 기준, 500만원/300만원/200만원)
조특법상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2년내 10%) • 우리사주조합 출자 및 기부금(전액) * 출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함, 연 400만원(창업·벤처기업은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전년대비 임금삭감액의 50%) * 단, 연 1,000만원 한도

주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7.1.부터 시행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기준 55%/30% * 단, 50~74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다자녀(2자녀 각 15만원, 3자녀부터 30만원) 출생 및 입양(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아동수당 도입으로 6세이하 아동은 다자녀공제 미적용
	• (특별세액공제) 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지출액의 15% 공제 * 단,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②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 지출액의 12% 공제 * 단, 장애인 15% 공제 ③ 표준공제 : 근로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 공제 * 단, 성실사업자 12만원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의 12% *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15%, 단, 소득규모별 300~400만원 한도
	•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의 11%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사업자의 복식기장 시 산출세액 20% * 단, 100만원 한도
	• (전자신고 공제) 전자신고된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공제) 발급 건당 20원
	•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시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소득세 납부한 국외 원천소득의 비중만큼 공제
	• (기타 조특법상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R&D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국인 급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거주자의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 항행사업 소득'
세액 감면	• (조특법상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조합 배당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산림 개발소득 세액감면' 등

14 소득세 세율

● (소득세 세율) 7개 과세표준 구간, 초과누진세율

(단위 : %)

과세표준 구간	현행
0~1,200만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부동산 양도차익과 주식양도차익에 다르게 적용

구분			현행
토지 · 건물 · 부동산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1~2년 보유		토지 : 40%, 주택 : 기본세율
	1년 미만 보유		토지 : 50%, 주택 : 40%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20%p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10%p * 조정대상지역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10%p
	미등기		70%
기타자산			기본세율
주식	대주주 (상장·비상장)	대기업 1년 미만	30%
		대기업 1년 이상	3억이하 : 20%, 3억초과 25%
		중소기업	3억이하 : 20%, 3억초과 25% * 2020.1.1.이후
	소액주주 (비상장)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파생상품			20%

주 : 1) 기본세율은 현행 6~42%의 누진 소득세율을 뜻함

2) 1세대1주택(고가주택제외) 및 일부 1세대2주택(이사·상속·결혼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등은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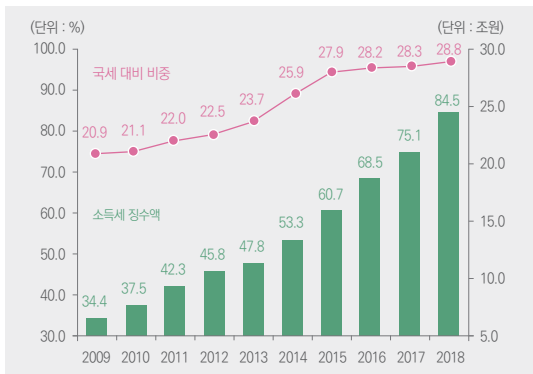
3) 파생상품은 현재 10% 탄력세율 적용

15 소득세수 현황

- 소득세는 2018년 84.5조원, 전체 국세대비 28.8%

(단위 : 조원, %)

연도	국세(A)	소득세(B)	비중(B/A)
2009	164.5	34.4	(20.9)
2010	177.7	37.5	(21.1)
2011	192.4	42.3	(22.0)
2012	203.0	45.8	(22.5)
2013	201.9	47.8	(23.7)
2014	205.5	53.3	(25.9)
2015	217.9	60.7	(27.9)
2016	242.6	68.5	(28.2)
2017	265.4	75.1	(28.3)
2018	293.6	84.5	(28.8)



16 소득세 과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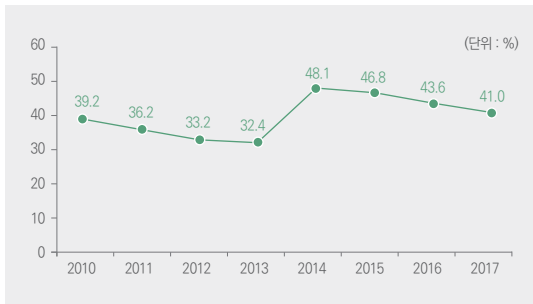
● 종합소득자 vs. 근로소득자

(2017년 소득 기준)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과세 인원	• 639.4만명	• 1,800.6만명
면세자	• 75.0만명 * 소득 1억원 초과 2,830명 * 소득 3억원 초과 318명 ※ 종합소득신고(필요경비 제외) 기준	• 739.1만명 (면세자 비중 41.0%) * 소득 1억원 초과 1,373명 (면세자 0.2%) * 소득 3억원 초과 : 해당 정보 없음
전체소득	• 200.1조원	• 637.6조원
1인당 평균소득	• 3.2천만원 * 비과세, 필요경비 등이 제외된 금액임	• 2.6천만원 * 비과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기준 (이를 포함, 3.5천만원)
비과세	• 해당정보 없음	• 4.0조원(급여총계의 0.6%)
1인당 평균세액	• 5.3백만원	• 3.3백만원
1인당 평균 감면액	• 소득공제 5.2백만원 • 세액공제 0.8백만원 - 세액감면 1.3백만원	• 소득공제 7.0백만원 * 비과세, 근로공제 8.4백만원 별도 • 세액공제 0.9백만원 - 세액감면 0.5백만원
평균 실효세율	• 평균 14.8%	• 평균 5.5%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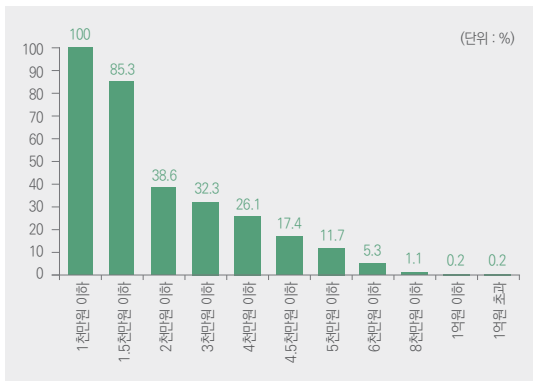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주 : 근로소득 기준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주 : 2017년 총급여 기준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17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 종합소득자, 2017년 소득 기준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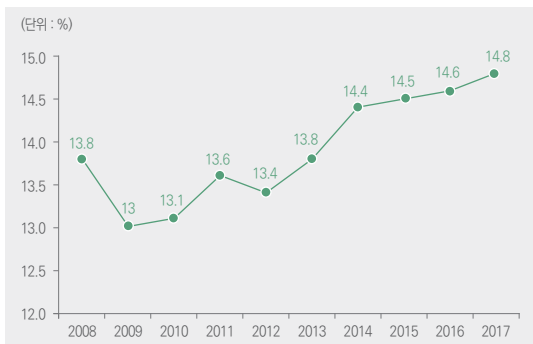
• 실효세율(%) = (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100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월결손금+배당가산액 등

(단위 : 만명, 조원,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종합소득 금액(A)	결정세액 (B)	실효세율 (B/A)
~1,200만원	390	28.3	0.4	1.5
~4,600만원	172	51.2	3.0	5.9
~8,800만원	43	31.3	3.5	11.3
~1.5억원	18	22.5	3.8	16.9
~3억원	10	22.1	5.1	23.2
~5억원	3	12.1	3.4	28.1
5억원 초과	2	32.7	10.4	32.0
합계 및 평균	639	200.1	29.7	14.8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근로소득자, 2017년 소득 기준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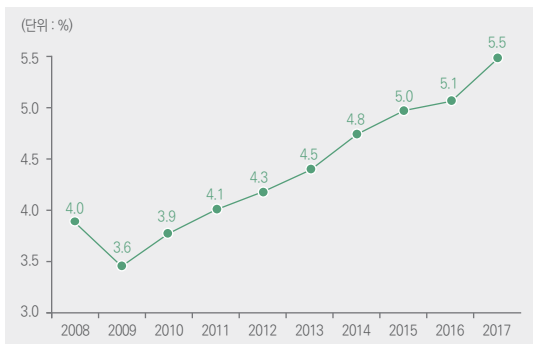
• 실효세율(%) = (결정세액/급여총계)×100

※ 급여총계는 비과세 등 차감 없이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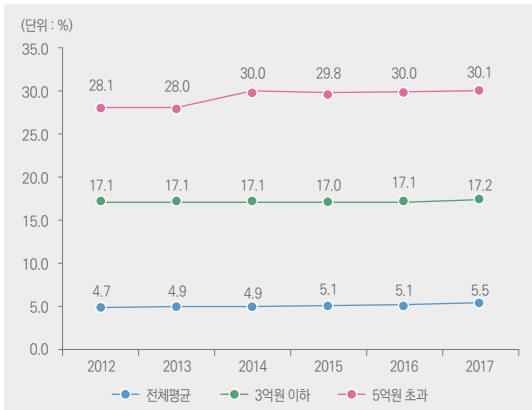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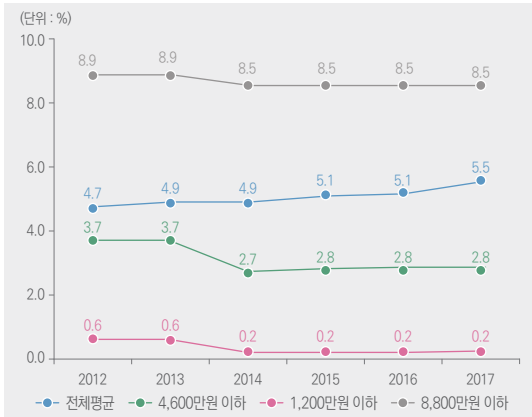
(단위 : 만명, 조원,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급여총계 (A)	결정세액 (B)	실효세율 (B/A)
~1,200만원	959	129.7	0.2	0.2
~4,600만원	661	295.6	8.3	2.8
~8,800만원	140	126.4	10.7	8.5
~1.5억원	30	42.4	6.3	14.9
~3억원	8	18.1	4.1	22.6
~5억원	1	6.2	1.7	27.9
5억원 초과	1	10.4	3.3	31.3
합계 및 평균	1,801	628.8	34.7	5.5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근로소득자 과표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18 국제비교 : 소득세 과표구간수

과표 개수	2009		2018	
	국가수	국가명	국가수	국가명
1개	5개국	체코,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4개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2개	5개국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	5개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3개	3개국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2개국	스웨덴, 영국
4개	9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그리스,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	5개국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5개	5개국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9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6개	3개국	일본, 미국, 이스라엘	0개국	-
7개	1개국	포르투갈	7개국	한국, 오스트리아, 칠레,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미국
8개	2개국	칠레, 멕시코	0개국	-
11개	1개국	스위스	2개국	멕시코, 스위스
17개	1개국	룩셈부르크	0개국	-
19개	0개국	-	1개국	룩셈부르크

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9 국제비교 : 소득세 최고세율

- (중앙정부기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최고세율 42%는 OECD 국가 중 14위 수준*

• 2018년 OECD 평균 최고세율 35.7%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프랑스	40.0	41.0	41.0	45.0	45.0
독일	45.0	45.0	45.0	45.0	45.0
일본	40.0	40.0	40.0	40.0	40.0
영국	40.0	50.0	50.0	50.0	45.0
이탈리아	43.0	43.0	43.0	43.0	43.0
한국	35.0	35.0	35.0	38.0	38.0
미국	35.0	35.0	35.0	35.0	39.6
캐나다	29.0	29.0	29.0	29.0	29.0
G7 주요국 평균	38.9	40.4	40.4	41.0	40.9
OECD 평균	34.5	35.1	34.5	35.0	35.5

주 : ()는 OECD 35개국 중 순위임

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45.0	45.0	45.0	45.0	45.0	(7)
45.0	45.0	45.0	45.0	45.0	(7)
40.0	45.0	45.0	45.0	45.0	(7)
45.0	45.0	45.0	45.0	45.0	(7)
43.0	43.0	43.0	43.0	43.0	(13)
38.0	38.0	38.0	40.0	42.0	(14)
39.6	39.6	39.6	39.6	37.0	(17)
29.0	29.0	33.0	33.0	33.0	(21)
40.9	41.7	42.2	42.2	41.9	-
35.5	35.5	35.8	35.7	35.7	-

● (지방세¹⁾ 등 포함기준) 2018년 우리나라 최고세율 46.2%는
OECD 국가 중 19위 수준

• 2018년 OECD 평균 최고세율 42.5%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본	50.0	50.0	50.0	50.0	50.8	50.8
프랑스	45.8	46.7	50.5	54.4	54.5	54.5
캐나다	46.4	46.4	46.4	48.0	49.5	49.5
독일	47.5	47.5	47.5	47.5	47.5	47.5
이탈리아	50.0	50.0	50.0	50.0	50.8	50.8
미국	41.9	41.9	41.9	41.8	46.3	46.3
영국	40.0	50.0	50.0	50.0	45.0	45.0
한국	38.5	38.5	38.5	41.8	41.8	41.8
G7 주요국 평균	45.2	46.8	47.6	48.4	48.7	48.8
OECD 평균	40.1	40.6	40.5	41.0	41.9	42.1

주 : 1) ()는 OECD 36개국 중 순위로 2009 및 2018년 기준임

2) 파란색은 순위가 높아졌음을, 빨간색은 낮아졌음을 표시

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와 소득세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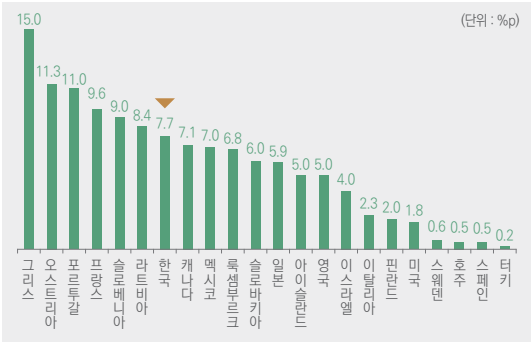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순위		
				2009	2018	변동
55.9	55.9	55.9	55.9	(6)	(2)	4 ↑
54.5	54.5	54.5	55.4	(12)	(4)	8 ↑
49.5	53.5	53.5	53.5	(10)	(7)	3 ↑
47.5	47.5	47.5	47.5	(8)	(15)	7 ↓
48.8	48.8	47.2	47.2	(13)	(16)	3 ↓
46.3	46.3	46.3	43.7	(17)	(22)	5 ↓
45.0	45.0	45.0	45.0	(21)	(21)	-
41.8	41.8	44.0	46.2	(26)	(19)	7 ↑
49.6	50.2	50.0	49.7			
42.2	42.5	42.4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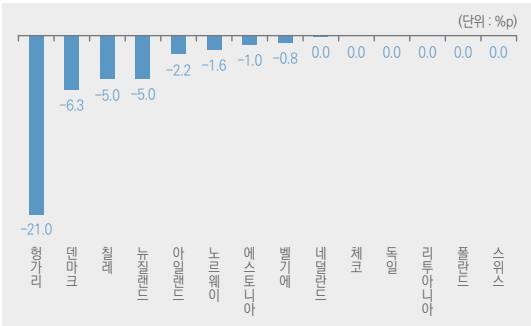
● (최고세율 변화) 2009년 vs. 2018년

- 세율 인상 16개국
- 세율 인하 17개국, 세율 유지 3개국

▶ 세율 인상 16개국 : 그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한국, 일본 등



▶ 세율 인하 17개국 : 헝가리, 덴마크 등 / 유지 3개국 : 네덜란드 등



주 :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자료 : OECD Tax Database

● 2017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소득세 부담 4.5%

- 2017년 OECD 평균 8.3%
- 우리나라는 2010년 3.2%에서 2017년 4.5%로 상승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캐나다	10.9	11.1	11.4	11.3	11.4	12.0	11.9	11.6
이탈리아	11.2	11.0	11.6	11.6	11.2	11.2	11.0	10.9
미국	8.2	9.3	9.3	10.0	10.2	10.6	10.4	10.5
독일	8.5	8.8	9.4	9.6	9.6	9.8	10.0	10.2
영국	9.3	9.3	8.9	8.9	8.7	8.9	9.0	9.1
프랑스	7.2	7.4	8.0	8.4	8.5	8.5	8.6	8.6
일본	4.9	5.1	5.2	5.6	5.7	5.8	5.7	5.7
한국	3.2	3.4	3.6	3.6	3.8	4.1	4.3	4.5
OECD평균	7.6	7.7	7.9	8.1	8.2	8.3	8.2	8.3

주 : 1) 2017년 호주, 그리스 미발표로 이를 제외한 평균임

2) 한국은 GDP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을 반영한 수치이며, 이를 기준으로 OECD 평균 도출

자료 : OECD Tax Database

21 소득세 개정 동향

● 소득세율 인하 후 최고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4단계		4단계		4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2012년		2014년	
5단계		5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2017년		2018년	
6단계		7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5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주 : 파란색은 세율 인하, 빨간색은 세율 인상 부분임

● 금융소득 과세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3년)

	1996~2001	2002~2012	2013~
과세단위	부부합산	개인단위	개인단위
기준금액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주 : 1998~2000년 귀속 소득분은 외환위기 여파 등을 고려하여 과세 유보

-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과세요건 완화

(지분율, 시가총액)

시행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주식	
1999.1.	5%						
2000.1.	3%	100억원					
2005.8.	(동일)		5%	50억원			
2013.7.	2%	50억원	4%	40억원	4%	10억원	
2016.4.	1%	25억원	2%	20억원	(동일)	(코스피 동일)	
2017.1.	(동일)		(동일)		(동일)	4%	25억원
2018.4.	1%	15억원	2%	15억원	(동일)	4%	15억원
2020.4.	1%	10억원	2%	10억원	(동일)	4%	10억원

-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인상

중소기업대주주	~2015	2016~2019	2020~
세율	10%	20%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 20%(현재 10% 탄력세율 적용)
('16. 1.1. 이후, 75%내 탄력운용)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정 (적용)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2년 (2013년~)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좌동) '15년부터 자영업자 포함 (단,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제외)															
신청 제외자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															
부양 자녀 · 연령	1인 * 18세미만	무자녀가구 추가 * 단, 배우자 필요	(좌동) * 60세이상 단독가구 가능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만원 지급	<table><tr><th>부양자녀</th><th>소득기준 (만원)</th><th>최대지급액 (만원)</th></tr><tr><td>없음</td><td>1,300</td><td>70</td></tr><tr><td>1인</td><td>1,700</td><td>140</td></tr><tr><td>2인</td><td>2,100</td><td>170</td></tr><tr><td>3인~</td><td>2,500</td><td>200</td></tr></table>	부양자녀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좌동)
부양자녀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1억 원 미만	(좌동)	(좌동)															
주택 요건	무주택 (5천만원 이하 1주택 포함)	무주택 (6천만원이하 1주택 포함)	(좌동)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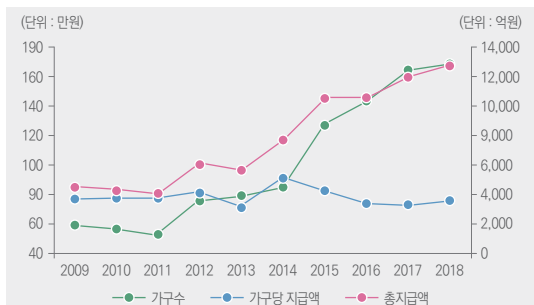
개정 (적용)	2014년 (2014년~)	2016·2017년 (2017년~)																								
적용 대상	(좌동)	(좌동)																								
신청 제외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단, 자녀장려금 수급불가)	(좌동)																								
부양자녀 ·연령	(좌동) * '16년 50대 이상 * '17년 40대 이상 가능	(좌동) * '18년 30대 이상 가능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table> <tr> <th>가구구성</th><th>소득기준 (만원)</th><th>최대지급액 (만원)</th></tr> <tr> <td>단독</td><td>1,300</td><td>70</td></tr> <tr> <td>홀벌이</td><td>2,100</td><td>170</td></tr> <tr> <td>맞벌이</td><td>2,500</td><td>210</td></tr> </table>	가구구성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1,300	70	홀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table> <tr> <th>가구구성</th><th>소득기준 (만원)</th><th>최대지급액 (만원)</th></tr> <tr> <td>단독</td><td>1,300</td><td>77</td></tr> <tr> <td>홀벌이</td><td>2,100</td><td>185</td></tr> <tr> <td>맞벌이</td><td>2,500</td><td>230</td></tr> </table>	가구구성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1,300	77	홀벌이	2,100	185	맞벌이	2,500	230
가구구성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1,300	70																								
홀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가구구성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1,300	77																								
홀벌이	2,100	185																								
맞벌이	2,500	230																								
재산 요건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시 장려금의 50%만 수급)	1억 4천만원 미만 (좌동)																								
주택 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기준 삭제)	(폐지)																								
적용 대상	(좌동)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포함	(좌동)																								
신청 제외자	(좌동)	(좌동)																								
부양자녀 ·연령	30대 이상 가능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 폐지	연령제한 폐지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table> <tr> <th>구성</th><th>소득기준 (만원)</th><th>최대지급액 (만원)</th></tr> <tr> <td>단독</td><td>1,300</td><td>85</td></tr> <tr> <td>홀벌이</td><td>2,100</td><td>200</td></tr> <tr> <td>맞벌이</td><td>2,500</td><td>250</td></tr> </table>	구성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1,300	85	홀벌이	2,100	200	맞벌이	2,500	250	<table> <tr> <th>구성</th><th>소득기준 (만원)</th><th>최대지급액 (만원)</th></tr> <tr> <td>단독</td><td>2,000</td><td>150</td></tr> <tr> <td>홀벌이</td><td>3,000</td><td>260</td></tr> <tr> <td>맞벌이</td><td>3,600</td><td>300</td></tr> </table>	구성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2,000	150	홀벌이	3,000	260	맞벌이	3,600	300
구성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1,300	85																								
홀벌이	2,100	200																								
맞벌이	2,500	250																								
구성	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	2,000	150																								
홀벌이	3,000	260																								
맞벌이	3,600	300																								
재산 요건	(좌동)	2억원 미만 (1.4억원 초과시 장려금의 50%만 수급)																								
지급시기	제도도입 이후 소득발생 다음연도 1회 지급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2회 지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지급연도 기준

연 도	가구수 (만가구)	가구당금액 (만원)	총 지급액 (억원)
2010	57	77	4,369
2011	52	77	4,020
2012	75	82	6,140
2013	78	72	5,618
2014	85	92	7,745
2015	128 [107]	82 [61]	10,566 [6,579]
2016	144 [94]	74 [60]	10,574 [5,700]
2017	166 [106]	72 [53]	11,967 [5,637]
2018	169 [91]	76 [52]	12,808 [4,729]

주 : []는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소득종류별, 총급여규모별 지급 현황 : 2017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수(만가구)	금액(억원)	가구당(만원)
근로소득	109.7	7,957.2	72.5
~1천3백만원	88.2	6,056.5	68.6
~2천1백만원	19.9	1,839.5	92.4
~2천5백만원	1.6	61.2	38.9
~4천만원	-	-	-
사업소득	59.6	4,851.0	81.3
~1천3백만원	45.6	3,591.5	78.7
~2천1백만원	12.1	1,187.2	98.1
~2천5백만원	1.9	72.3	38.0
~4천만원	-	-	-
자녀장려금	가구수(만가구)	금액(억원)	가구당(만원)
근로소득	51.5	2,625.2	50.9
~1천3백만원	12.9	831.1	64.2
~2천1백만원	11.8	740.1	62.9
~2천5백만원	5.4	300.2	55.5
~4천만원	21.4	753.9	35.2
사업소득	39.0	2,104.0	54.0
~1천3백만원	11.1	708.4	63.7
~2천1백만원	8.1	508.6	62.6
~2천5백만원	4.1	241.2	58.5
~4천만원	15.6	645.7	41.4

자료 : 국세청, 「2018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개편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 2천만원 이하는 2018년 까지 비과세였으나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시행됨

* 분리과세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과세하는 종합과세와 달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2019년 기준>

구분		월세	전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2주택 보유자	분리과세	비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분리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하 : 비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상 : 분리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1주택 보유자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2주택 보유자	종합과세	비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하 : 비과세 보증금합계 3억원 이상 : 종합과세

주 : 1.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2.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합산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형주택(전용면적 40㎡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12.31.까지 주택 수에 미포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

-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 25% 초과 금액의 15~4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개요, 2019년 기준>

구성	제도 개요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선불카드 30% • 도서·공연비 30%(‘18.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각각 ‘12, ‘13년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19.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소득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min(300만원, 총급여20%)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은 각 100만원 추가
일몰 기한	2019.12.3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책목표 추가 연혁>

	정책목표 추가	추가공제 신설 내역
1999 도입	과세표준 양성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 소득공제 추가
2012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추가
2013	대중교통 이용유도	대중교통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추가
2014	소비심리 개선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추가
2018	문화생활 지원	도서·공연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대상)
2019	문화생활 지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 소득공제 추가(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대상)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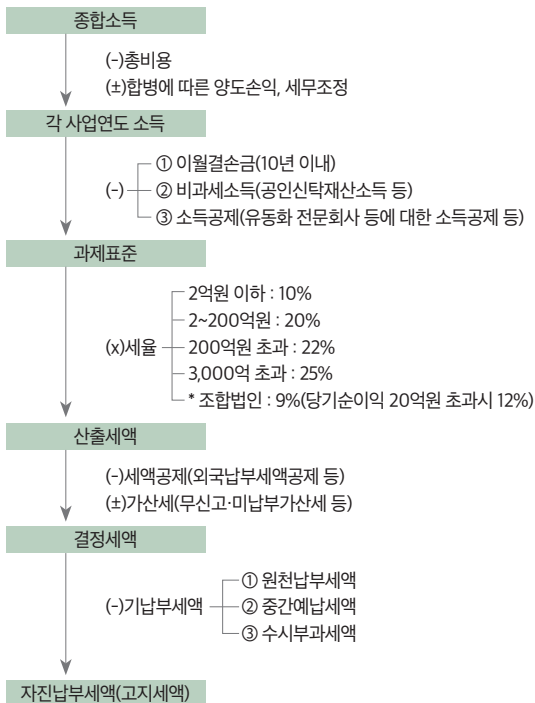
국 세

법인세



22 법인세 과세체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소득 × (법인세율 + 추가세율*)

* 지가급등지역 10%, 주택·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

23 법인세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내국 법인	•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 법인	•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
과세 대상	내국 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 ※ 거주자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 ※ 외국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외국 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한함 ※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 ※ 과세소득 : 이자·배당·부동산·사업소득 등 10가지 (법인세법 제93조)
과세 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 결산상 당기순이익±세무조정 ※ 세무조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가산조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감산조정 (예) 의제배당 : 이익(익금산입) 차입자본 이자, 실물자본 감가상각 : 비용(손금산입)	
과세 표준	• 각 사업연도소득-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국제비교>

글로벌 과세체계	•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 과세 • OECD 국가 중 5개국 : 한국,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영토주의 과세체계	•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나머지 OECD 국가들(31개국)

24 법인세 최저한세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 1991년 시행, 각종 조세감면에 대해 총량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

※ 단,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이월공제 가능

<해외사례>

- 대만(12%), 멕시코(16.5%) 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운영
- ※ 일본은 최저한세 제도 대신, 감면제도별로 산출세액의 10~20%선에서 세액공제·감면의 한도 설정

- 일부 세액공제·감면 항목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를 감안 시 면세기업 발생 가능

(단위 : 억원)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항목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794	25,684
R&D비용 세액공제	12,114	45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105	-
수도권박 이전 공장·본사 세액감면	269	8,513
영농·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209	11
외국인투자 법인세 세액감면	37	1,539

주 : 2017년 신고연도 기준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2018.

25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 (법인세율) 2008~2010년 인하된 후 2011년 중간 과표구간 신설, 2018년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4단계 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8~ (현행)
1억원	13%	11%	11%	10%	10%	10%
1~ 2억원	25%					
2~200억원		25%	22%	22%	20%	20%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25%

-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2008~2010년 인하, 2013~2014년 대기업 중심 세율 인상

※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감면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수준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현행)
100억원	13%	13%	11%	10%	10%	10%
100~1,000억원				11%	12%	12%
1,000억원 초과	15%	15%	14%	14%	16%	17%
중소기업	10%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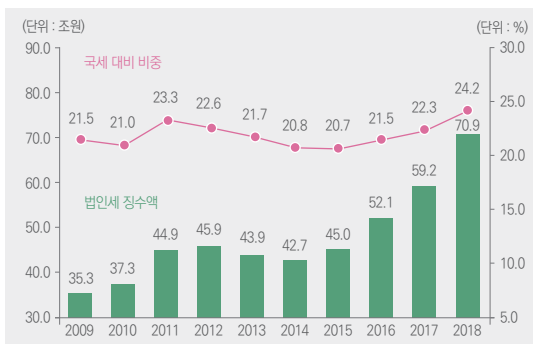
주 : 음영부분은 세율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표시

26 법인세수 현황

● 법인세는 2018년 70.9조원, 국세대비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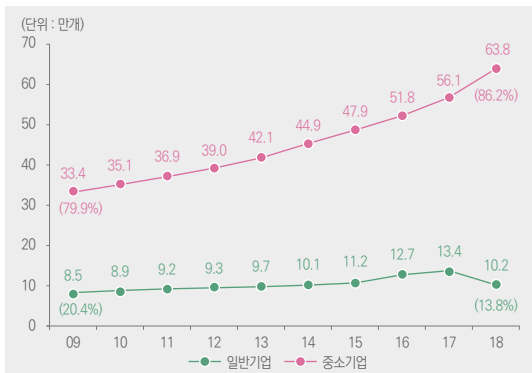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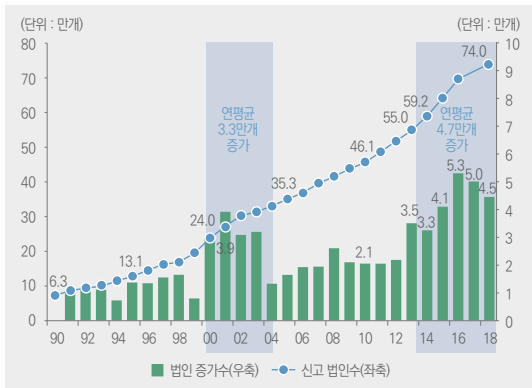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연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09	164.5	35.3	(21.5)
2010	177.7	37.3	(21.0)
2011	192.4	44.9	(23.3)
2012	203.0	45.9	(22.6)
2013	201.9	43.9	(21.7)
2014	205.5	42.7	(20.8)
2015	217.9	45.0	(20.7)
2016	242.6	52.1	(21.5)
2017	265.4	59.2	(22.3)
2018	293.6	70.9	(24.2)



27 신고법인수 추이

- 신고법인수 : 1990년 6.3만개 → 2018년 74.0만개
- 2018년 일반기업 10.2만개, 중소기업 63.8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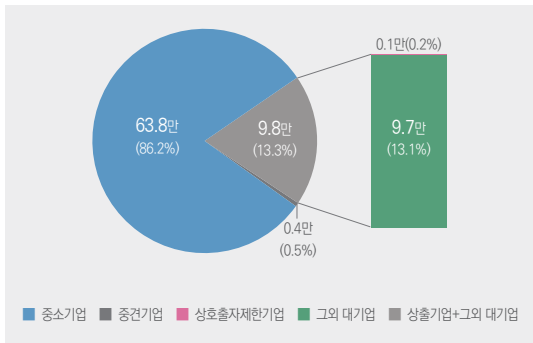


주 : 2018년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값(2017년 귀속)

자료 :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8 법인세 과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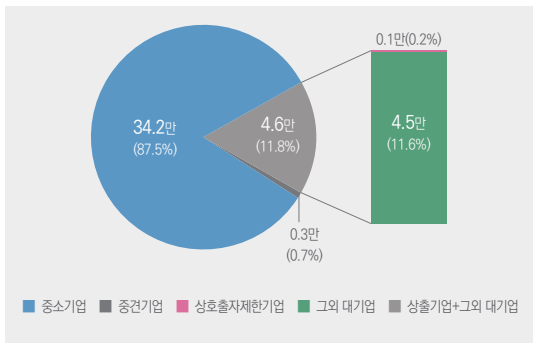
● 신고법인수 74.0만개



주: 2018년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값(2017년 귀속)

자료: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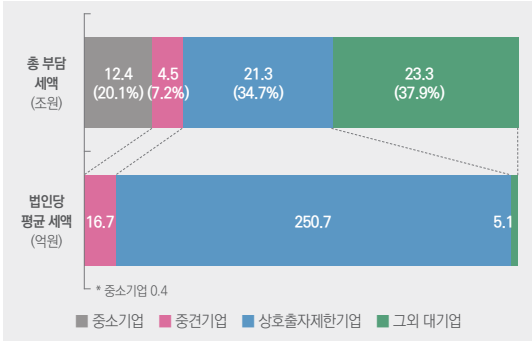
● 세부담 기업수 39.1만개



주: 2018년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값(2017년 귀속)

자료: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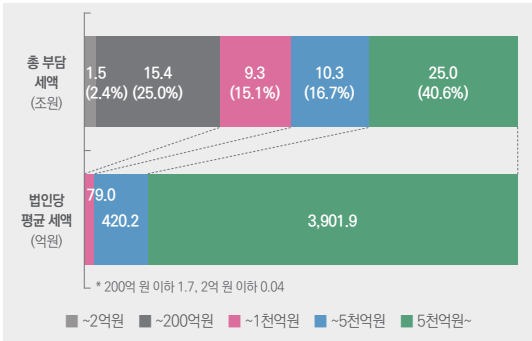
● 기업형태별



주: 2018년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값(2017년 귀속)

자료: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과표구간별



주: 2018년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값(2017년 귀속)

자료: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9

법인세 과세 현황 : 기업규모별

(단위 : 만개, 조원, %, %p)

구분		전체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	상출	기타	
신고법인수		74.0	10.2	0.4	0.1	63.8
흑자법인수		47.6	6.4	0.3	0.1	41.3
(비중)		(0.6)	(0.6)	(0.7)	(0.7)	(0.6)
당기순이익		332.4	245.9	21.9	104.7	119.3
각사업연도소득		384.1	280.5	26.0	122.8	131.7
비과세*		4,985.8	4,611.4	32.0	95.3	4,484.1
소득공제*		56,284.7	43,842.1	700.7	2,636.4	40,505.1
과세표준		350.2	258.3	24.1	117.3	116.9
산출세액		70.3	55.0	4.9	25.7	24.4
공제 · 감면	금액	9.9	6.8	0.6	4.5	1.7
	(비중)	(100.0)	(68.6)	(6.0)	(45.8)	(16.8)
	법인당*	0.4	10.9	3.6	95.1	4.0
총부담 세액	금액	61.5	49.1	4.5	21.3	23.3
	(비중)	(100.0)	(79.9)	(7.3)	(34.7)	(37.9)
	법인당*	1.6	10.1	16.7	250.7	5.1
명목세율(A)		20.1	21.3	20.4	21.9	20.9
실효세율(B)		17.6	19.0	18.7	18.2	19.9
세율감소(A-B)		2.5	2.3	1.7	3.7	1.0

주 : 1) 2018년 신고기준(2017년 귀속)값으로 *의 단위는 억원임

2)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100,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단위 : 만개, 조원, %, %p)

구분		전체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1천억원 이하	5천억원 이하	5천억원 초과
신고법인수		74.0	64.3	9.6	0.12	0.02	0.01
흑자법인수		47.6	38.1	9.4	0.11	0.02	0.01
(비중)		(64.4)	(59.2)	(98.6)	(97.0)	(97.6)	(98.4)
당기순이익		332.4	52.8	92.6	43.4	43.9	99.7
각사업연도소득		384.1	33.0	110.7	50.3	54.1	136.0
비과세*		4,985.8	4,282.5	603.1	7.8	82.4	10.0
소득공제*		56,284.7	49,517.2	6,644.8	122.7	-	-
과세표준		350.2	16.3	101.7	47.0	50.0	135.2
산출세액		70.3	1.6	18.2	9.9	10.9	29.7
공제 · 감면	전체	9.9	0.3	3.0	0.8	0.8	5.0
	(비중)	(100.0)	(3.5)	(34.3)	(8.7)	(9.0)	(56.2)
	법인당*	0.4	0.02	0.4	9.9	38.6	803.6
총부담 세액	전체	61.5	1.5	15.4	9.3	10.3	25.0
	(비중)	(100.0)	(2.9)	(30.1)	(18.2)	(20.1)	(48.7)
	법인당*	1.6	0.05	1.7	81.6	420.2	3,901.9
명목세율(A)		20.1%	10.1%	17.9%	21.0%	21.8%	22.0%
실효세율(B)		17.6%	9.0%	15.2%	19.8%	20.6%	18.5%
세율감소(A-B)		2.5%	1.0%	2.7%	1.1%	1.2%	3.5%

주 : 1) 2018년 신고기준(2017년 귀속)값으로 *의 단위는 억원임

2)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100,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31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 2018년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은 17.6%

- 2013년 이후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
-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산출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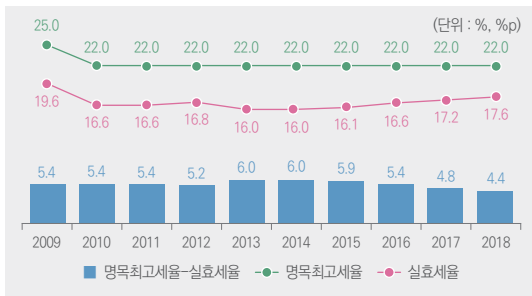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13
전체	16.0	16.0	16.1	16.6	17.2	17.6	1.6
1억원 이하	8.6	8.8	8.7	8.8	9.8	8.8	0.2
1~2억원	8.3	8.4	8.3	8.3	8.4	8.3	0.0
2~5억원	10.5	10.7	10.6	10.6	10.7	10.6	0.1
5~10억원	12.9	13.1	13.1	13.4	13.4	13.3	0.4
10~20억원	14.2	14.6	14.8	14.9	15.0	14.9	0.7
20~50억원	15.4	15.5	15.8	16.0	16.3	16.3	0.9
50~100억원	16.1	16.6	16.5	17.1	17.2	17.3	1.2
100~200억원	16.5	16.7	17.3	17.4	17.8	18.0	1.5
200~500억원	17.7	17.7	18.0	18.5	19.0	19.5	1.8
500~1,000 억원	18.6	18.9	18.8	19.5	19.5	20.3	1.7
1,000~5,000 억원	18.7	18.4	18.7	19.5	20.5	20.6	1.9
5,000억원 초과	16.4	16.4	16.4	17.2	18.0	18.5	2.1

주 : 법인세 신고기준 값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세율) 2018년 명목최고세율 22.0%, 실효세율 17.6%

• 명목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격차 : 5.4%p('09)→4.4%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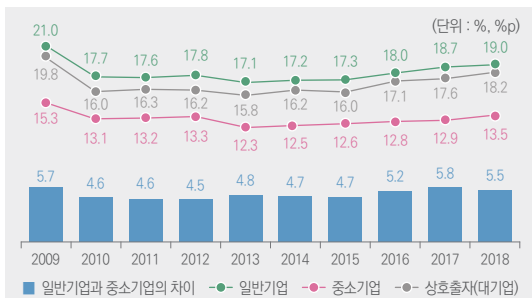


주 : 법인세 신고기준 값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자료를 토대로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기업규모별) 2018년 기준 일반기업 19.0%(상호출자집단 18.2%), 중소기업 13.5%

•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 5.7%p('09)→5.5%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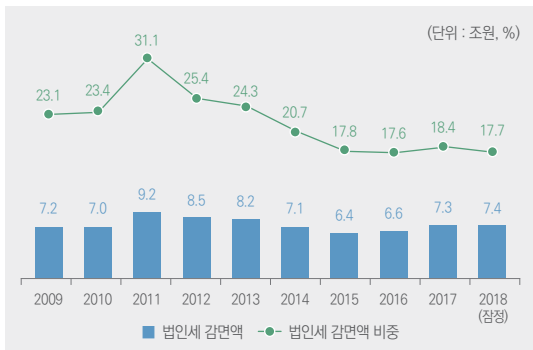


주 : 법인세 신고기준 값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자료를 토대로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32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 법인세 감면액(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 7.4조원('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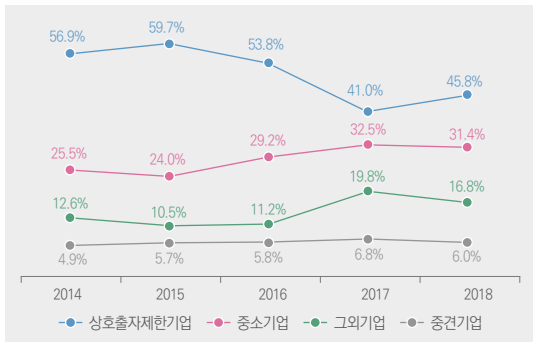


주: 1. 감면액 비중= 총 국세 감면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중

2.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외된 금액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기업규모별 공제감면 점유비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33 국제비교 : 법인세 과표구간수

과표 구간수	해당 국가	
1개	30개국	호주 ¹⁾ ,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²⁾ ,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개	2개국	네덜란드 ³⁾ , 프랑스 ⁴⁾
3개	1개국	벨기에 ⁵⁾
4개	2개국	한국, 포르투갈 ⁶⁾

주 : 특정소득(체코, 슬로베니아 등), 특정산업(이스라엘, 영국), 특정도시(룩셈부르크), 손실기업(이탈리아), 소규모 법인(호주, 일본) 등에 대한 차등세율은 단일세율 분류하였고, 2019년 기준

1) 호주 : 기본세율 30%, 5천만 AUD 이하 소기업 27.5%

2) 일본 : 기본세율은 23.4%,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 소기업 15%

3) 네덜란드 : 20만 유로 미만 20%, 20만 유로 이상 25%

4) 프랑스 : 50만 유로 미만 28%, 50만 유로 이상 33.33%

5) 벨기에 : 기본세율 29%(법인세에 추가 과세하는 austerly surcharge 2%), 과세소득 10만유로 미만 법인 20%세율 적용, 과세소득 2.5만유로/9만유로/32.25만 유로 기준, 24.25%/31%/34.5% 누진세율

6) 포르투갈 : 기본세율 21%, 부가세로 과세소득 150만유로/750만유로/3,500만유로 기준, 0%/3%p/5%p/9%p씩 추가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34 국제비교 : 법인세 최고세율

- 중앙정부 기준 : 2019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국가 중 10위 수준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프랑스	34.4	36.1	36.1	38.0	38.0
한국	22.0	22.0	22.0	22.0	22.0
이탈리아	27.5	27.5	27.5	27.5	27.5
일본	30.0	30.0	30.0	28.1	28.1
미국	35.0	35.0	35.0	35.0	35.0
영국	28.0	26.0	24.0	23.0	21.0
독일	15.8	15.8	15.8	15.8	15.8
캐나다	18.0	16.5	15.0	15.0	15.0
G7 평균	27.0	26.7	26.2	26.1	25.8
OECD 평균	23.3	23.2	23.1	23.3	23.1

주 : ()는 OECD 36개국 중 순위로, 2019년 기준값임

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 22.0%(‘10) → 25.0%(‘19)
- G7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 27.0%(‘10) → 21.4%(‘19)
-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 23.3%(‘10) → 21.7%(‘19)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38.0	34.4	44.4	34.4	32.0	(1)
22.0	22.0	22.0	25.0	25.0	(10)
27.5	27.5	24.0	24.0	24.0	(13)
23.9	23.4	23.4	23.2	23.2	(14)
35.0	35.0	35.0	21.0	21.0	(21)
20.0	20.0	19.0	19.0	19.0	(29)
15.8	15.8	15.8	15.8	15.8	(31)
15.0	15.0	15.0	15.0	15.0	(32)
25.0	24.5	25.2	21.8	21.4	
22.9	22.6	22.4	21.9	21.7	

● (지방세²⁾포함기준) 2019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7.5%는 OECD 국가 중 11위 수준

- 2019년 G7 평균 법인세최고세율(지방세포함)은 27.3%
OECD 평균 법인세최고세율(지방세포함)은 23.5%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프랑스	34.4	36.1	36.1	38.0	38.0
독일	29.5	29.6	29.6	29.6	29.7
일본	39.5	39.5	39.5	37.0	37.0
이탈리아	31.4	31.4	31.3	31.3	31.3
한국	24.2	24.2	24.2	24.2	24.2
캐나다	29.4	27.7	26.1	26.2	26.2
미국	39.2	39.2	39.1	39.0	39.1
영국	28.0	26.0	24.0	23.0	21.0
G7 평균	33.1	32.8	32.2	32.0	31.8
OECD평균	25.1	25.1	25.0	25.1	24.9

주 : 1) ()는 OECD 36개국 중 순위로, 2019년 기준값임

2) 파란색은 순위가 높아졌음을 빨간색은 낮아졌음을 표시

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포함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 24.2%(’10) → 27.5%(’19)
- G7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 33.1%(’10) → 27.3%(’19)
-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 25.1%(’10) → 23.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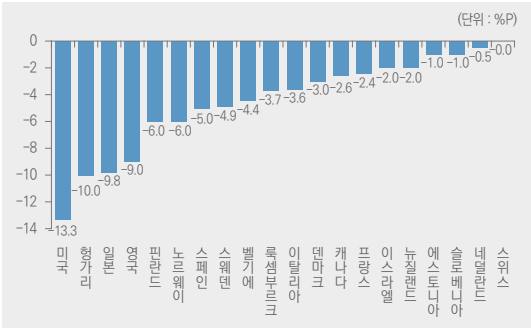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위		
					’10	’19	변동
38.0	34.4	44.4	34.4	32.0	(3)	(1)	2↑
29.8	29.8	29.9	29.9	29.9	(10)	(5)	5↑
32.1	30.0	30.0	29.7	29.7	(1)	(6)	5↓
31.3	31.3	27.8	27.8	27.8	(5)	(10)	5↓
24.2	24.2	24.2	27.5	27.5	(22)	(11)	11↑
26.7	26.7	26.7	26.8	26.8	(11)	(12)	1↓
39.0	38.9	38.9	25.8	25.9	(2)	(13)	11↓
20.0	20.0	19.0	19.0	19.0	(13)	(33)	20↓
31.0	30.2	31.0	27.6	27.3			
24.7	24.4	24.2	23.7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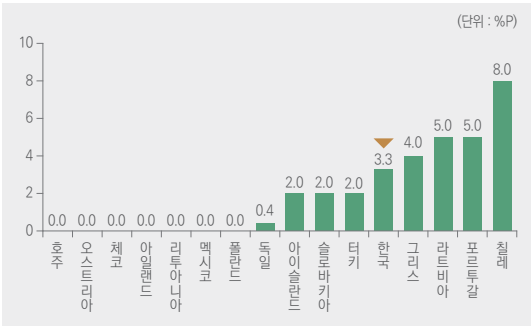
● (최고세율 변화) 2010년 vs. 2019년

- 세율 인하 20개국
- 세율 인상 9개국, 세율 유지 7개국

▶ 세율 인하 20개국 :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 세율 인상 9개국 : 칠레, 그리스, 한국 등 / 유지 7개국 : 호주, 체코 등



주 : 지방세 등을 포함한 최고세율 기준

자료 : OECD Tax Database

● 2017년 기준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 3.6%

• 2017년 OECD 평균 3.0%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본	3.2	3.5	3.8	3.9	3.8	3.7	4.0
캐나다	3.2	3.2	3.3	3.4	3.4	3.4	3.4
한국	3.6	3.5	3.2	3.0	3.1	3.4	3.6
영국	2.9	2.7	2.6	2.5	2.4	2.7	2.8
프랑스	2.6	2.6	2.6	2.3	2.1	2.0	2.3
이탈리아	2.2	2.4	2.6	2.2	2.0	2.1	2.1
독일	1.7	1.7	1.8	1.7	1.7	2.0	2.0
미국	1.8	2.0	2.1	2.3	2.1	2.0	1.9
OECD평균	2.8	2.8	2.8	2.8	2.8	2.9	3.0

주 : 우리나라는 SNA 2015년 기준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36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고용증대세제 신설 및 제도 적용기간 및 공제수준 확대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2018년)

● 혁신성장 및 투자촉진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공제 적용요건 완화 및 일몰연장
- 초연결 네트워크 설비투자 세액공제 신설(2018년)
- 혁신성장투자자산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2018년)

●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정비 지속

- 법인세 감면액 비중 : ('11) 31.1% → ('17) 18.4%

● 법인세율은 2018년부터 2007년 수준으로 환원

	2007	2009	2013	2014	2018~
법인세율	25%	22% (-3%p)	22%	22%	25% (+3%p)

● 주요 고용지원 세제 확대

2017~2018	2019~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기업 세액공제(조특 29의3②)	
(신설)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대상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복귀자 - 공제율 : 중견 5%, 중소 10% - 적용기한 : 2020년
고용증대세제(조특 29의7)	
(2018년) • 제도 신설 - 투자 무관, 고용증가인원 세액공제	• 제도 확대 : 공제액/적용기간 ↑ - 청년 중심 공제수준 확대

2017~2018				2019~			
(만원)	중소 (2년)	중견 (2년)	대 (1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 (2년)
상시	700*	450	-	상시	700*	450	-
청년/장애인	1,000*	700	300	청년/장애인	1,100*	800	400
* 수도권 밖 770만원, 1,100만원 - 적용기한 : 2020년				* 수도권 밖 770만원, 1,200만원 -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 30의2)

(2018년) 적용기한 확대, 공제액 인상 - 적용기한 1년 연장(~2018년) - 공제액 확대: (중소) 700만원→1천만원 (중견) 500만원→700만원	• 적용기한 1년 연장(~2019년)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 30의3)

(2017년) 중소기업 대상 소득공제 임금감소×50%+시간당임금×50% (2018년) 공제율 상향 임금감소×50%+시간당임금×75%	• 대상확대/공제방식 개정 - 대상 : 중소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 공제방식 : 세액공제 - 공제율 : 임금감소×10% +시간당임금×15%
	• 적용기한 3년 연장(~2021년)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 30의4①)

(2017년) • 적용기한(~2017년) (2018년) • 적용기한 1년 연장	• 적용기한 3년 연장(~2021년)
--	----------------------

사회보험신규가입자 세액공제(조특 30의4②)

(2018년) • 적용기한(~2018년)	• 적용기한 1년 연장(~2019년)
------------------------	----------------------

● 주요 혁신성장·투자촉진 세제지원

2017~2018					2019~				
신성장동력, R&D 조세특례(조특 10, 10조의 2)									
(2018년)									
• 신성장 R&D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18년					• 신성장 R&D세액공제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 적용기한 : 2018년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 적용기한 3년 연장(~2021년)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조특 25)									
					•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	일몰	일반	중견	중소	(%)	일몰	일반	중견	중소
R&D설비	'18	1	3	6	R&D설비	'21	1	3	7
안전설비	'18	1	3	7	안전설비	'19	1	5	10
에너지절약	'18	1	3	6	에너지절약	'21	1	3	7
환경보전	'18	1	3	10	환경보전	'21	3	5	1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 25의5)									
(2017년) 제도신설					• 적용기한 연장, 요건완화				
- 요건 :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 요건 : 매출액 대비 R&D 비중 2% ↑				
- 적용기한 : 2018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3년 연장(~2021년)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 25의7)									
					• 제도 신설				
					- 대상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설비				
					- 공제율 : 투자액의 최대 3%				
					- 적용기한 : 2020년 12월 31일				
혁신성장투자자산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조특 28의3)									
					• 제도 신설				
					- 대상 : 사업용 고정자산(중소/중견) 혁신성장투자자산(일반기업)				
					- 취득기간 : 2018.7.1.~2019.12.31.				

Part 2

국 세

부가가치세



37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며, 세율은 단일세율로 10%
 - 단, 수출재화 등 영세율 적용, 기초생활필수품 등 면제

매출세액 (A)	$\begin{aligned}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 + \text{예정신고누락분} \\ & \pm \text{대손세액 가감} \\ & \dots\dots\dots \\ & = \text{매출세액} \end{aligned}$
매입세액 (B)	$\begin{aligned} & \text{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 + \text{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 - \text{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dots\dots\dots \\ & = \text{매입세액} \end{aligned}$
납부세액 (A-B)	$\begin{aligned} & \text{매출세액} \\ & - \text{매입세액} \\ & \dots\dots\dots \\ & = \text{납부(환급) 세액} \\ & \text{공제, 감면세액} \\ & \text{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 + \text{가산세액} \\ & \dots\dots\dots \\ & = \text{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end{aligned}$

● 납세의무자 : 사업자, 재화 수입업자

사업자	구분
과세사업자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의 재화·용역 공급업자
수입자	공급자가 국외거주자로, 재화 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

구분		과세 내용
일반 과세자	기준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간이 과세자	기준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1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38 영세율, 면세

- 영세율 : 재화·용역 공급시 영의 세율(0%) 적용
- 면세 :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세

구분		영세율	면세
납세의무		있음	없음
적용목적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촉진	부가가치 구성요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기초생활품 등), 조세정책상의 목적
사업자의 협력의무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	납세의무자 아님,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없음
거래 징수	매출	면세 : 영의세율로 매입자 거래징수 하지 않음	면세 : 과세대상거래 아님
	매입	과세 : 환급 또는 매출세액공제	과세 :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가산
특징		완전면세	부분면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 면세대상

부가가치세법	
기초 생활 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대중여객운송용역(일반고속버스 포함)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국민 후생	• 의료보건용역(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등 제외)과 혈액 • 교육용역
문화	•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광고 제외) •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등의 입장
생산 요소	• 토지 • 금융·보험 용역(보호예수 등 일부 부수용역 제외) • 인적용역
기타	• 우표, 인지, 복권 • 일정한 금액 이하의 담배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농·임·어업용 및 연안선박용 석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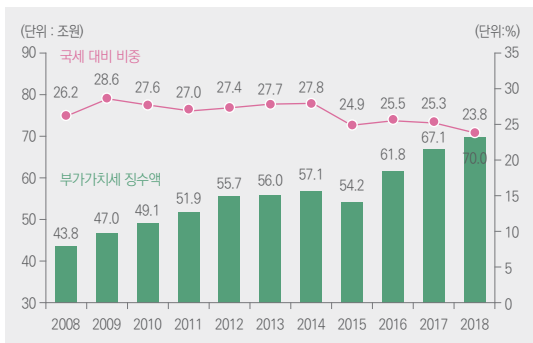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39 부가가치세 현황

● 부가가치세는 2018년 70.0조원, 국세 대비 23.8%

(단위 : 조원, %)

연도	국세(A)	부가가치세(B)	비중(B/A)
2008	167.3	43.8	(26.2)
2009	164.5	47.0	(28.6)
2010	177.7	49.1	(27.6)
2011	192.4	51.9	(27.0)
2012	203.0	55.7	(27.4)
2013	201.9	56.0	(27.7)
2014	205.5	57.1	(27.8)
2015	217.9	54.2	(24.9)
2016	242.6	61.8	(25.5)
2017	265.4	67.1	(25.3)
2018	293.6	70.0	(23.8)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2009년 512만명에서 2018년 648만명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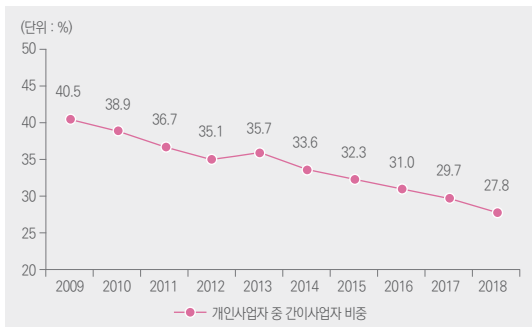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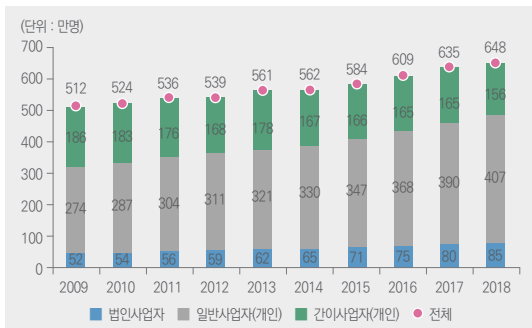
• 사업자 유형별 인원 :

(’09)법인 52만명 / 일반 274만명 / 간이 186만명

(’18)법인 85만명 / 일반 407만명 / 간이 156만명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 비중은 2009년 40.5%에서 2018년 27.8%로 감소

※ 간이사업자 비중=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40 국제비교 : 부가가치세율

● 2019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회원국³⁾ 중 32위 수준

- 2019년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 19.3%
- 주요국 중 이탈리아·프랑스·영국 20%대, 우리나라와 독일 10%대, 일본과 캐나다 각각 8%와 5% 수준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탈리아	20.0	20.0	21.0	21.0	22.0	22.0
프랑스	19.6	19.6	19.6	19.6	20.0	20.0
영국	17.5	20.0	20.0	20.0	20.0	20.0
독일	19.0	19.0	19.0	19.0	19.0	19.0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일본	5.0	5.0	5.0	5.0	5.0	8.0
캐나다	5.0	5.0	5.0	5.0	5.0	5.0
미국	-	-	-	-	-	-
주요국 평균	13.7	14.1	14.2	14.2	14.4	14.9
OECD평균	18.2	18.7	18.9	19.1	19.2	19.3

주 : 1. ()는 OECD 34개국 중 순위로 2018년 기준값임

2. 파란색은 순위가 낮아졌음을, 빨간색은 높아졌음을 표시

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한국(10%), 덴마크(25%), 일본(8%)는 단일세율구조 그 외 대부분 부수세율구조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 10.0%(’10) → 10.0%(’19)
- 주요국 평균 부가가치세율 : 13.7%(’10) → 14.9%(’19)
-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 : 18.2%(’10) → 19.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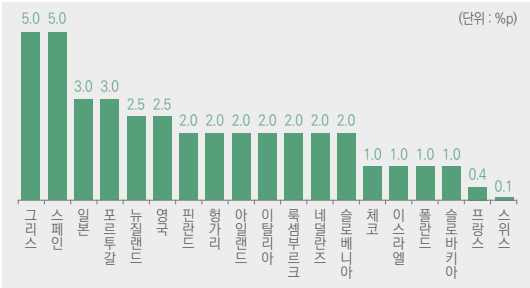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순위		
				’10	’19	변동
22.0	22.0	22.0	22.0	(15)	(11)	4 ↑
20.0	20.0	20.0	20.0	(18)	(21)	3 ↓
20.0	20.0	20.0	20.0	(25)	(23)	2 ↑
19.0	19.0	19.0	19.0	(20)	(25)	5 ↓
10.0	10.0	10.0	10.0	(32)	(32)	—
8.0	8.0	8.0	8.0	(35)	(33)	2 ↑
5.0	5.0	5.0	5.0	(34)	(35)	1 ↓
—	—	—	—	—	—	—
14.9	14.9	14.9	14.9			
19.3	19.3	19.3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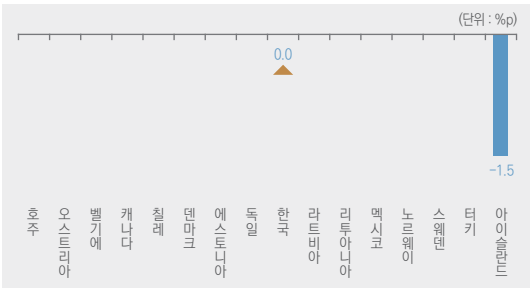
● (세율 변화) 2010년 vs. 2019년

- 세율 인상 19개국⁴⁾
- 세율 유지 15개국 / 세율 인하 1개국

▶ 세율 인상 19개국 : 그리스,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 등



▶ 세율 유지 15개국 : 호주, 한국 등 / 세율 인하 1개국 : 아이슬란드



자료 : OECD Tax Database

4) 일본은 사회보장 관련 재정 악화 해소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 하였으며(5%→8%, '14.4.), 오는 2019년 10%로 인상 예정('19.10.)

41 국제비교 : 경감세율

● OECD 국가 현황

(단위 : %)

국가	표준/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 세율
오스트리아	20.0	10.0/13.0	19.00
벨기에	21.0	0.0/6.0/12.0	-
캐나다	5.0	0.0	13.0/14.0/15.0
체코	21.0	10.0/15.0	-
덴마크	25.0	0.0	-
핀란드	24.0	0.0/10.0/14.0	-
프랑스	20.0	2.1/5.5/10.0	0.9/2.1/10.0/13.0 & 1.05/1.75/2.1/8.5
독일	19.0	7.0	-
그리스	24.0	6.0/13.0	4.0/9.0/17.0
헝가리	27.0	5.0/18.0	-
아이슬란드	24.0	0.0/11.0	-
아일랜드	23.0	0.0/4.8/9.0/13.5	-
이탈리아	22.0	4.0/5.0/10.0	-
일본	8.0	-	-
한국	10.0	-	-
영국	20.0	0.0/5.0	-

자료 : OECD Tax Database

42 국제비교 :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 세법지식·계산능력·장부 기장능력·신고서 작성능력 등 납세순응력 부족을 감안

국가	내용
영국	• (VAT 소매제도) 연간 소매매출액 1억파운드 이하 소매업자에 대해 매입액에서 매출 관련 세액 추계를 인정 • (평균세율과세제도) 다음해 연간과세매출 예상액 15만파운드 (세제외) 이하 또는 총사업수입(세포함) 187,500파운드 이하 사업자에 대해 총매출액(세포함)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 산출
독일	• (과세평균율제도) 과거 매출액 61,356유로를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년도 매출액 매출세액에 과세평균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액 산출
일본	• (간이과세제도) 기준기간에 과세매출액 5,000만엔 이하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제도 선택 가능
한국	• (간이과세제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43 국제비교 : 부가가치세 부담

● 2017년 기준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부담 4.1%

- 2017년 OECD 평균 7.2%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부담 : 4.0%(’12) → 4.1%(’17)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독일	7.0	7.0	6.9	7.0	6.9	6.9
프랑스	7.1	7.1	7.1	7.1	7.1	7.2
영국	6.7	6.7	6.7	6.8	6.8	6.8
캐나다	4.4	4.3	4.3	4.5	4.6	4.6
한국 ¹⁾	4.0	3.9	4.0	3.6	3.9	4.1
일본	2.6	2.7	3.7	4.2	4.1	4.0
OECD 평균	6.9	6.9	7.0	7.0	7.1	7.2 ²⁾

주 : 1) 한국의 경우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에 따른 GDP를 적용해 산출

2) OECD 평균은 미국의 판매세(Sales tax)를 제외하고 산출하였으며, 2017년 호주, 그리스의 경우 실적 미발표로 2016년 값을 적용해 산출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4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전환 및 면세 신설

	내용
과세 전환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한 수익 사업('07년) •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10년) • 치료 이외의 미용 성형 등의 의료용역('13년) • 대형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와 청소용역('14년) •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14년) • 안면윤곽술 등 미용성형수술('14년)
영세율 신설 등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방송수신기('11년)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05년) 및 연장('18년)
면세 신설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바우처 방식 복지서비스('08년)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관련 설계용역('08년) • 노인복지주택 공급 일반 관리·경비용역 및 청소용역('10년) • 목재펠릿('10년)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수급자 사육동물 진료용역('11년) • 친환경 전기버스('11년) •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12년) • 일반 고속버스('14년) • 연극 및 무용,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15년) • 액상형 분유, 어작업 대행용역 면제 확대('16년) • 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19년)

주 : ()는 도입연도 기준임

자료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

* 면세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 금액을 의제하여 공제

개정연도	면세농산물 등
'05. 03.	일반 업종 : 2/102 음식업 (원칙) 3/103 (특례) '06년말까지 면세농산물 5/105
'07. 04.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특례) '08년말까지 면세농산물 6/106
'10. 03.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과세유흥장소 4/104 (특례) '10년말까지 농산물 법인 6/106, 개인 8/108
'12. 0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 4/104
'13. 0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17. 1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9/109(~'19.12.31.) 과세유흥장소·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개정연도	재활용폐자원
'06. 12.	6/106 중고품 10/110
'10. 01.	6/106 중고자동차 : '10. 1. 1. ~ '10. 12. 31. 10/110 '11. 1. 1. ~ '13. 12. 31. 9/109
'14. 01.	재활용품 : '14. 1. 1. ~ '15. 12. 31. 5/105 '16. 1. 1. ~ '16. 12. 31. 3/103 중고자동차 : '14. 1. 1. ~ '14. 12. 31. 9/109
'14. 12.	중고자동차 : '16. 12. 31. 까지 9/109
'13. 02.	재활용품 : '17. 1. 1. ~ '18. 12. 31. 3/103 중고자동차 : '17. 1. 1. ~ '18. 12. 31. 9/109
'17. 12.	중고자동차 : '18. 1. 1. ~ '18. 12. 31. 10/110
'18. 12.	재활용품 : '19. 1. 1. ~ '21. 12. 31. 3/103 중고자동차 : '19. 1. 1. ~ '19. 12. 31. 10/110

● 매입자납부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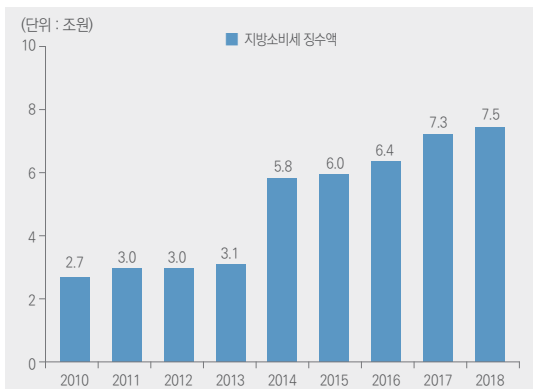
- 납세의무자(매출자)의 세금포탈* 방지 목적
- 2008년 금지금 거래에 대한 제도 도입 후 확대

* 금도매업자에 대한 탈루 추정 규모('03~'05상반기) : 8,422억원

2008	2009	2014	2015	2016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배분

- 2010년 부동산 경기불황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완화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액의 5%) 도입
- 2013년 부동산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 세율 인상(5% → 11%)
- 2019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세율 인상(11% → 15%)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Part 2

국 세

상속세·증여세



45 상속세 과세체계

- ‘유산세’ 방식 :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
-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등), 추정 상속재산(상속 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 시가산)
- 세율 : 10~50% 누진세율, 세대생략시 30% 할증과세

과세표준	1억원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세율	10%	20%	30%	40%	50%

※ 할증과세 : 미성년자인 세대생략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과세하되, 대습상속은 적용배제

● 비과세 및 공과금 등 공제

- 비과세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유증시, 분묘 금양임야·묘토, 족보, 제구 등
- 공제 : 공과금, 장례비용(5백만원~1천만원),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채무

● 세액공제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1년내 100%, 매 1년마다 10%씩 체감)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상속공제

구분	항 목	공제내용	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인 적 공 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가액	30억원 (최소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	
	장애자공제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통계청 고시)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200~500억원 한도	가업영위기간별 차등적용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금융 재산 공제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전체	2억원
	2,000만원~1억원	2,000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멸실훼손시 손실가액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시 주택가액 80% 공제	5억원

46 증여세 과세체계

- ‘유산취득세’ 방식 : 수증인의 실제 취득 재산에 과세
- 과세대상 : 거주자의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의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및 국외예적금
 - 유·무형, 법률적·사실적, 직·간접을 불문한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 증여의제(명의 신탁 재산, 일감몰아주기 등)
 -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 세율 : 10~50% 누진세율, 세대생략시 30% 할증과세

과세표준	1억원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세율	10%	20%	30%	40%	50%

※ 할증과세 : 미성년자인 세대생략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과세하되, 대습상속은 적용배제

- 비과세
 - 국가·지자체로부터의 증여재산, 부양의무자 간 생활·교육비 등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10년간 합산기준 6억원 한도), 직계존비속(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6촌(4촌) 이내 혈족(친족)(1천만원 한도)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1천만원 한도)

● 2004년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포괄주의 증여개념 도입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증여의 과세대상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넓은 의미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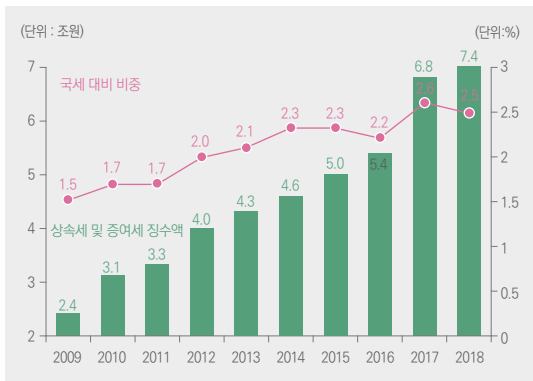
증여세				
민법상 증여	증여의제(14개), 증여추정(2개)			새로운 유형
계약에 의한 무상이전	일반거래를 통한 무상이전	자본거래를 통한 무상이전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사례	형식에 관계없이 직간접 무상이전
포괄주의	열거주의(~'98)			
	유형별 포괄주의('99~'03)			
	완전 포괄주의('04~)			

47 상속·증여세 현황

● 상속·증여세는 2018년 7.4조원, 국세대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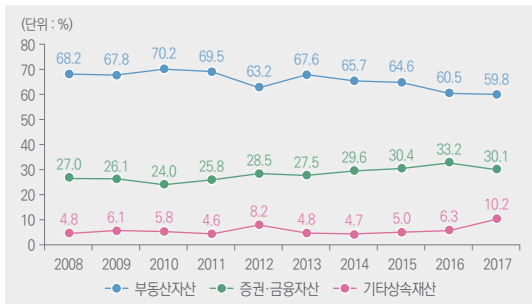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연도	국세(A)	상속·증여세(B)	비중(B/A)
2009	164.5	2.4	(1.5)
2010	177.7	3.1	(1.7)
2011	192.4	3.3	(1.7)
2012	203.0	4.0	(2.0)
2013	201.9	4.3	(2.1)
2014	205.5	4.6	(2.3)
2015	217.9	5.0	(2.3)
2016	242.6	5.4	(2.2)
2017	265.4	6.8	(2.6)
2018	293.6	7.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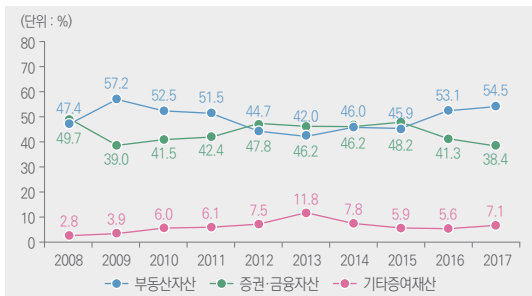
● 자산종류별 상속재산 구성비율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비중
(’08)68.2% → (’17)59.8%
- 주식 등 금융자산과 기타재산 비중
(’08)금융자산 27.0%, 기타자산 4.8% → (’17)30.1%, 10.2%



● 자산종류별 증여재산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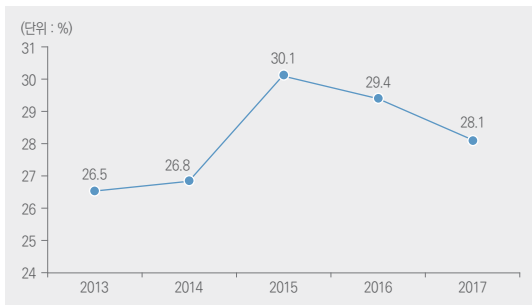
- 주식 등 금융 자산 비중
(’08)49.7% → (’17)38.4%
- 부동산자산과 기타재산 비중
(’08)부동산자산 47.4%, 기타자산 2.8% → (’17)54.5%, 7.1%



48 상속·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 상속세 실효세율 추이

• 2013년 26.5%에서 2015년 30.1%로 상승이후 2017년 28.1%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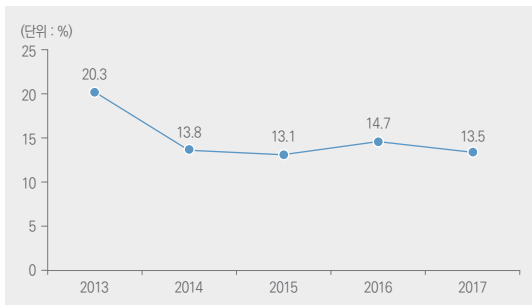


주 : 실효세율 = 총결정세액 / 과세표준 × 10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증여세 실효세율 추이

• 2013년 20.3%에서 2017년 13.5%로 하락 추세



주 : 실효세율 = 총결정세액 / 과세표준 × 10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49 국제비교 : 상속·증여세 부담

●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 비중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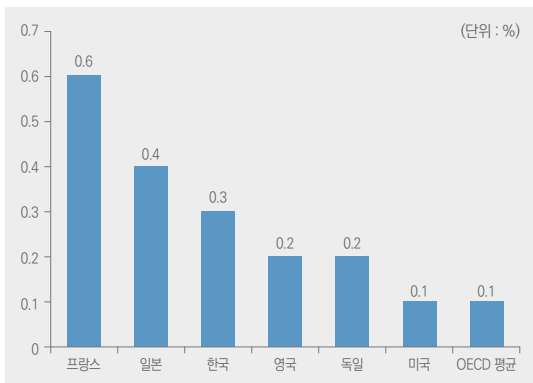
• 2016년 OECD 평균 0.1% 대비 0.2%p 가량 높음

(단위 : %)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미국	OECD 평균
0.6	0.4	0.3	0.2	0.2	0.1	0.1

주 : OECD Statistics의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기준

자료 : OECD Statistics(2019.6.20.기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0 국제비교 : 상속·증여세제

● (상속세제) OECD 주요국 동향

국가	상속세 유무	세율	최근 주요 개정	
미국	○	18~40% (12단계 누진 세율)	2001	감세법안가결 (‘02~’09년 비과세 확대, 최고세율 단계 인하, ’10년 유산세 폐지)
			2010	유산세 일시 정지
			2011	유산세 부활
			2013	최고세율 인상,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가 남긴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 항구화
영국	○	40%	2007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가 남긴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게함
			2010	비과세 물가연동 동결
프랑스	○	직계 : 5~45% (7단계 누진세율) 형제 : 5~45% (2단계 누진세율) 4촌이내 친족 : 55% 기타 : 60%	2006	생애증여의 누적기간 축소(10년→6년)
			2007	배우자 등 과세 면제, 공제액 인상(직계, 형제)
			2012	세율인상(직계), 생애증여 누적기간 연장(6년→10년), 공제액 인하(직계)
			2013	공제액과 세율 등의 물가연동 폐지
			2014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말 이전 토지 증여 및 2016년말 이전 신규 주택의 자녀 및 증손자녀 증여 거래 특별공제

국가	상속세 유무	세율	최근 주요 개정	
독일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 7~30% (7단계 누진세율)	2008	공제액인상, 세율적용금액 인상, 세율 인상(2구간 및 3구간)
		형제, 양자녀, 양부모 등 : 15~43% (7단계 누진세율)		
		기타 : 30~50% (2단계 누진)	2010	세율인하(2구간)
			2016	가업상속세제 사업용 자산 요건 강화
이탈 리아	○	배우자, 직계 : 4% 형제, 기타 친족 : 6% 기타 : 8%	2001	상속세폐지
			2006	상속세 재도입(유산취득세방식), 단일세율
			2007	형제를 배우자, 직계 범위로 구분하여 기타 친족 세율 적용
일본	○	10~55% (8단계 누진세율)	2003	최고세율 인하,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 도입
			2008	가업승계납세유예제도 시행
			2013	최고세율 인상, 기초공제 인하
캐나다	×	-	1972	상속세 폐지, 사망시 양도소득과세 도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

51 상속·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

- 최근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가업승계세제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정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11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도입('15년), 대·중견기업 과세강화('17년)

2011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2013	• 중소·중견기업 과세완화 :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차등 (일반/중소·중견, 각각 30%/50%, 3%/10%)
2015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 지배주주 주식보유 비율 기준 30%
2017	• 대·중견기업 과세강화 :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인하 (대/ 중견, 각각 5%/0%, 20%/5%), 특수관계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거래액 1천억원 초과시 과세, 과세 중견·중소기업 범위 확대(자산 5조원 이상)
2018	• 외국인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 축소 : 주식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보지 않음

자료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 가업승계세제 확대

- 2007년 이후 매년 대상요건 완화 및 공제금액 인상 등이 이루어졌고, 2019년 들어 사후요건 등 완화와 공제액 인상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

2008	• 가업상속 요건 완화 : 중소기업 공제비율 및 한도 상향 조정 (20% → 40%, 30억원 → 60~100억원), 사업영위기간 완화 (15년 → 10년)
2009	• 중소기업 적용 요건 완화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가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2011	• 공제 확대 : 공제율 40% → 70%, 공제한도 피상속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 100~300억원
2012	• 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제외기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 2,000억원 초과
2013	• 제도 개선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중소·중견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공제금액 및 한도 확대(가업 상속재산의 70% → 100%, 한도 경영 10년/15년/20년 이상, 100억원/150억원/300억원 → 200억원/300억원/500억원)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2018	•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여부 판단기준 신설 : 근무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 •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 감소시 추징배제 사유 추가 : 균등 무상감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출자전환 •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자료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Part 2

국 세

기타세목



52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 또는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 행위 등을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부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제조장 과세물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 보석·귀금속, 시계, 모피 : 기준가격 • 석유류 : 반출수량 • 그 외 : 반출가격
수입 과세물품	수입업자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과세장소	과세장소 경영자	인원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요금
과세영업장수	과세영업장소 경영자	총매출액

●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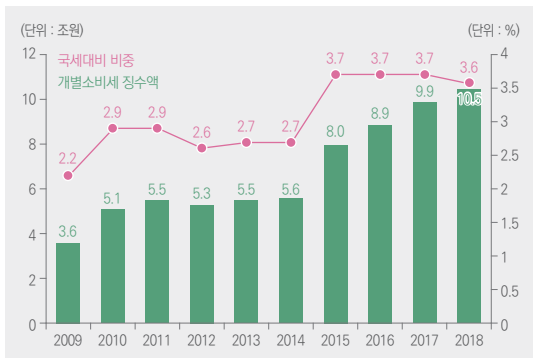
과세 물품	• 투전기, 오락용품 등 20% • 보석·귀금속·모피·가방·시계 등 20% • 자동차와 에너지 다소비 품목 5% • 껌 594원 / 껌형 전자담배 529원 / 20개비 기준
	•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 발전용 유연탄 46원/kg(43원~49원/kg) • 천연가스 발전용 12원/kg·발전이외 60원/kg(42원/kg)
과세 장소	• 입장행위 : 경마장 2,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골프장 12,000원, 카지노 50,000원 등
	• 유흥주점 등 음식요금의 10% • 카지노는 매출액 500억원/1,000억원 기준 0/2/4%

주 : ()는 탄력세율이 적용된 값임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2016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24원→30원/kg) -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대)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적 감면
2017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30원→36원/kg) - 컬러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인상(126원→529원/20개비) -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종료
2018	- 유연탄·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조정 (유연탄 36원/kg→42원/kg, 발전용 천연가스 60원/kg→12원/kg) - 노후경유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감면 신설(70%)

● 개별소비세는 2018년 10.5조원, 국세 대비 3.6%



53 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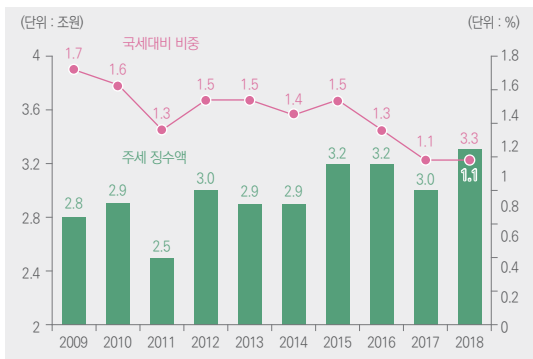
-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하여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해 부과

주종		세율
주정		57,000원/kl (알코올 1%초과마다 600원 가산)
발효주	탁주 ¹⁾	5%
	약주	30%
	청주	30%
	맥주 ²⁾	72%
	과실주	30%
증류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72%	

주 : 1) 2019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탁주 세율을 41.7원/ℓ로 예정

2) 2019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맥주 세율을 830.3원/ℓ로 예정

- 주세는 2018년 3.3조원, 국세 대비 1.1%



54 교통·에너지·환경세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재원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0년 한시 ‘교통세’로 신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해 2018년까지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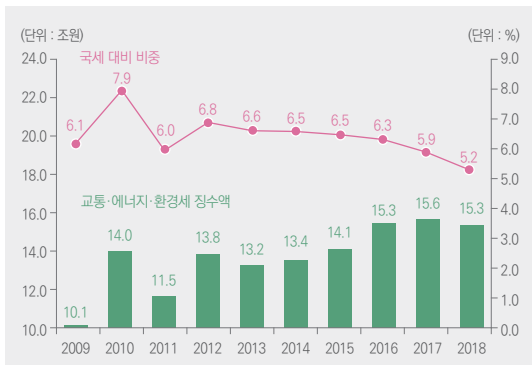
● 세율

- 휘발유 및 대체유류 : 475원/ℓ
- 경유 및 대체유류 : 340원/ℓ
-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며, 현행 탄력세율은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임
(단, '19.08.31.까지 휘발유 492원/ℓ, 경유 349원/ℓ)

● 면세

- 수출 및 우리나라 주둔 외국군대 납품, 외교관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8년 15.3조원, 국세 대비 5.2%



55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보유의 조세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2005년 도입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과세기준액 : 주택분(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종합합산 토지분 5억원, 별도합산토지분 80억원

구분		과표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누진공제
주택		3억원 이하	0.50% / 0.60%	-
		6억원 이하	0.70% / 0.90%	150만원 / 180만원
		12억원 이하	1.00% / 1.30%	360만원 / 450만원
		50억원 이하	1.40% / 1.80%	960만원 / 1,230만원
		94억원 이하	2.00% / 2.50%	6,280만원 / 8,070만원
		94억초과	2.70% / 3.20%	15,080만원 / 19,070만원
토지	종합합산	15억이하	1.00%	-
		45억이하	2.00%	1,500만원
		45억초과	3.00%	7,500만원
	별도합산	200억원이하	0.50%	-
		400억원이하	0.60%	1억원
		400억원초과	0.70%	2.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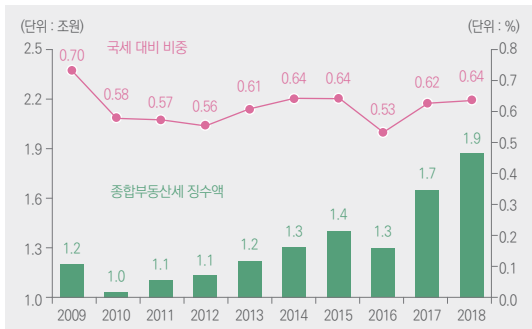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2주택 이상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증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 • 별장 •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임야 등 • 분리과세대상 중 기준초과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기준초과토지 •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도합산 • 건물 부속토지 • 인·허가 받은 사업용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농지·임야 등 • 공장용지, 공급목적 토지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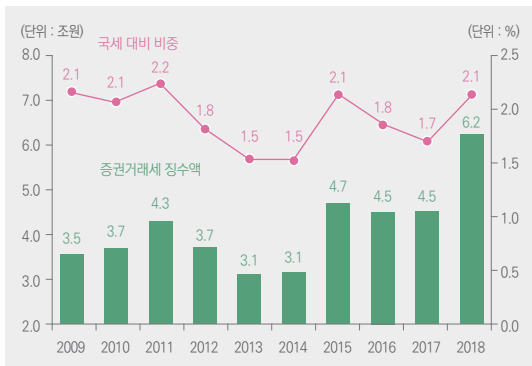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8.

●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1.9조원, 국세 대비 0.64%



56 증권거래세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매매결제되거나 금융투자업자 및 양도자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 과세
 -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 수량을 곱한 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함
- 세율
 - 법정세율 : 거래금액(비상장주식 등)의 0.5%
 - 탄력세율 : 유가증권시장 0.1%(농특세율 0.15%), 코스닥 0.25%, 코넥스 0.1%
- 비과세
 - 국가, 지자체의 양도, 자본시장법(제119조)에 따른 주권매출, 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 등
- 증권거래세는 2018년 6.2조원, 국세 대비 2.1%



57 인지세

- 재산에 관한 권리 등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시 과세기준 초과자에 대해 부과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2. 금융·보험 기관과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등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4.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5.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 휴양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6.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 신용카드회원/유선·무선전화 가입/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300원/1천원/300원
7. 상품권 및 선불카드 ¹⁾	권면금액 1만원 : 50원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200원 권면금액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400원 권면금액 10만원 초과 : 800원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400원
9. 예·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 등	100원

주 : 1) 모바일 상품권은 면제대상이나, 3만원 초과 시 지류 상품권과 동일하게 과세 (2020.1.1.~)

- 인지세는 2018년 0.9조원, 국세 대비 0.3%

58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및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납세의무자에 대해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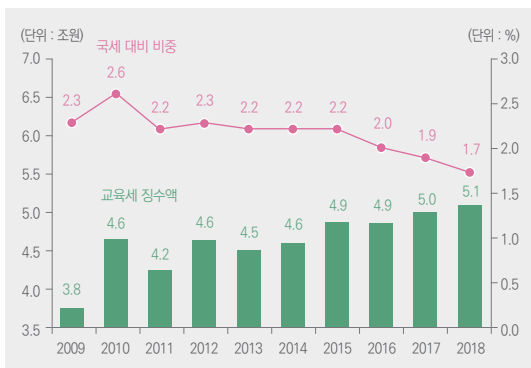
● 세율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 개별소비세액의 30% (등유, 중유, 수송용 부탄은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이상, 30%)

● 비과세

-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

- 교육세는 2018년 5.1조원, 국세 대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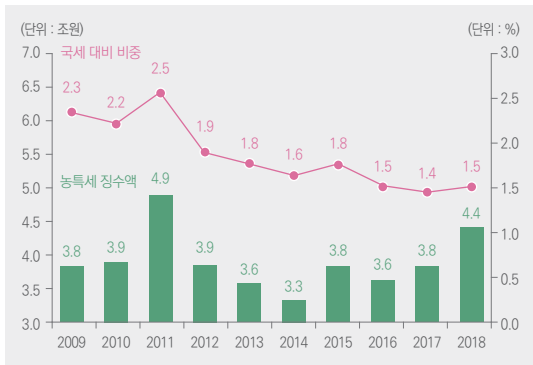
59 농어촌특별세

- URE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세로서 1994년 7월 도입, 2024년 6월까지 30년간 적용

• 조세감면액, 취득세액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과세표준	세율	부과 대상
조세감면액	20%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면액
	10%	세금우대종합저축 감면액
개별소비세액	1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물품
	30%	골프장 입장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
취득세액 *표준세율 2% 적용	10%	부동산 등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 등 제외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 농어촌특별세는 2018년 4.4조원, 국세 대비 1.5%



60 관세

● 수출·입에 따라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수입관세만 부과

●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가격인 '과세가격'* 또는 '수량'

※ 당해물품 거래가격,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등에 기초한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를 통해 결정

● 관세율 :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국정세율'(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등),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 (WTO양허세율, FTA협정세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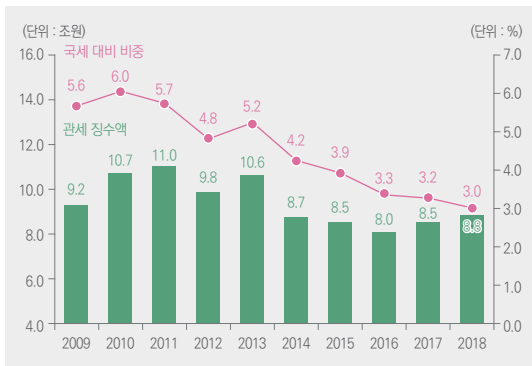
※ 단, 관세법상의 적용순위에 따름

● 관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22개로, 산업지원 목적(11개), 국제협정 및 관례(11개)

● 외교관 물품, 정부 용품, 재수출·재수입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 면세

● 외국인투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등 감면

● 관세는 2018년 8.8조원, 국세 대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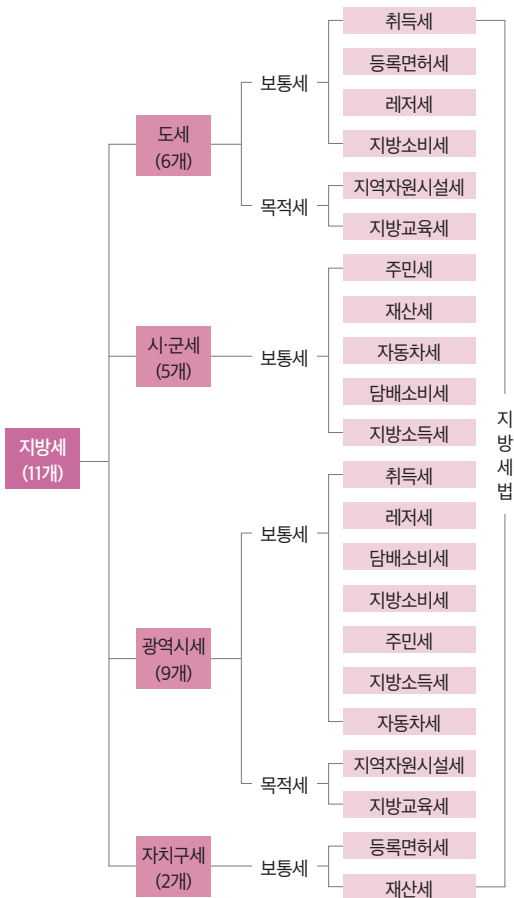
Part 3

지방세



61 지방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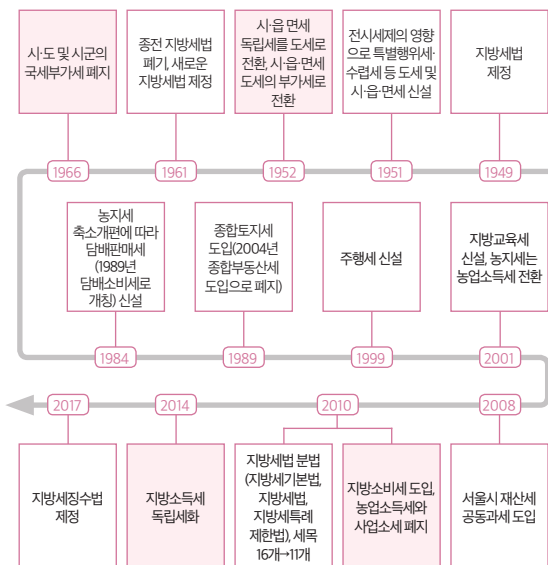
● 지방세체계: 다세목 1세법



62 지방세제의 변천

● 지방세제의 변천

- 1949년 지방세법 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제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방재정강화 목적으로 국세의 부가세 중심의 체계
- 1966년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국세부가세를 폐지하고 독립세 형태의 지방세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1984년 농지세 축소 개편에 따라 담배판매세 도입과 1989년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를 위해 종합토지세 도입
- 2000년대 이후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2014년)가 이루어짐
- 2010년말 지방세법 분법과 더불어 세목정비(16개 세목 → 11개 세목)가 이루어짐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일반세율 :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 1.0~3.0% • 중과세율 : 4.4%, 8.0%, 8.4% 등
지방 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0.6~4.2%
	양도소득		0.6~7.0%
	법인소득		1.0~2.5%
	특별징수		법인·소득세액의 10.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 0.1~0.4% • 건축물 : 0.25%~4% • 토지 종합 : 0.2~0.5%, 별도 : 0.2~0.4%, 분리 : 0.07~4% • 선박 : 0.3~5% • 항공기 : 0.3%
	도시 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1cc당 18~200원 (승합 자동차 등은 다름)
	주행분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15%
담배 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종류별 다름)
등록 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주 : 세목은 보통세, 목적세 순, 징수액이 큰 순서임

자료 : 서울특별시, 「2017 알기쉬운 지방세」, 2017.

세목	과세대상		세율
등록 면허세	등록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0%), 설정 (0.2%), 기타(10,000원)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0.4%), 자본증가(0.4%) • 비영리법인: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18,000원~67,500원
주민세	균등분	개인·법인	개인(1만원 이하), 법인(5~50만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종업원분	급여액	급여총액의 0.5% (1억 3,500만원 초과)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방 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각각 20%(취득분 20%제외), 20%, 40%, 10~25%, 20%, 30%, 43.99%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 자원분	지하수	채수량 1㎡당 20~200원

64 지방세 수입

● 최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호조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합계	52.3 [6.4]	53.9 [3.1]	53.8 [-0.3]	61.7 [14.8]
취득세	13.9	13.8	13.3	16.4
지방소득세	9.5	10.3	10.3	9.7
재산세	7.6	8.0	8.3	8.8
자동차세	6.5	6.6	6.7	6.9
지방소비세	3.0	3.0	3.1	5.8
지방교육세	5.0	5.1	5.0	5.5
담배소비세	2.8	2.9	2.8	3.0
주민세	0.3	0.3	0.3	1.4
등록면허세	1.2	1.2	1.3	1.5
지역자원시설세	0.8	0.9	0.9	1.1
레저세	1.1	1.1	1.0	1.1
기타	0.7	0.7	0.6	0.6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값 ()는 전체 지방세수 중 세목별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단위: 조원, %)

2015	2016	2017	2018	
71.0 [15.0]	75.5 [6.3]	80.4 [6.5]	84.3 [4.9]	(100.0)
20.8	21.7	23.5	23.8	(28.2)
12.8	13.1	14.4	16.7	(19.8)
9.3	9.9	10.7	11.5	(13.7)
7.1	7.6	7.8	7.9	(9.4)
6.0	6.4	7.3	7.5	(8.9)
5.8	6.3	6.4	6.5	(7.8)
3.0	3.7	3.6	3.5	(4.1)
1.5	1.8	1.9	2.0	(2.4)
1.8	1.7	1.6	1.7	(2.0)
1.4	1.4	1.5	1.6	(1.9)
1.1	1.1	1.1	1.0	(1.2)
0.4	0.8	0.6	0.5	(0.6)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값 ()는 전체 지방세수 중 세목별 비중값임
 자료 : 행정안전부

(단위: 조원)

구분	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계	80.41	23.49	1.61	1.05	3.60	7.27
서울	19.30	5.30	0.39	0.14	0.63	1.31
부산	4.95	1.42	0.10	0.11	0.22	0.56
대구	3.16	0.94	0.06	0.01	0.16	0.38
인천	4.43	1.63	0.09	0.02	0.20	0.31
광주	1.71	0.42	0.04	0.02	0.10	0.23
대전	1.71	0.40	0.03	0.02	0.10	0.23
울산	1.98	0.48	0.03	0.00	0.09	0.19
세종	0.67	0.33	0.01	0.00	0.02	0.06
경기	20.71	6.59	0.42	0.55	0.87	1.39
강원	1.95	0.56	0.04	0.00	0.14	0.26
충북	2.11	0.57	0.04	0.00	0.13	0.26
충남	3.43	0.96	0.06	0.02	0.18	0.35
전북	2.01	0.50	0.04	0.00	0.12	0.30
전남	2.32	0.55	0.04	0.00	0.13	0.28
경북	3.72	0.95	0.07	0.00	0.22	0.44
경남	4.82	1.34	0.10	0.10	0.25	0.60
제주	1.45	0.55	0.04	0.07	0.06	0.13

(단위: 조원)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과년도 수입
1.86	14.44	10.66	7.77	1.51	6.42	0.72
0.49	4.64	3.36	1.08	0.27	1.45	0.23
0.09	0.73	0.60	0.57	0.11	0.40	0.04
0.05	0.44	0.38	0.41	0.05	0.25	0.03
0.09	0.59	0.61	0.41	0.09	0.36	0.03
0.04	0.30	0.17	0.22	0.03	0.14	0.02
0.05	0.31	0.22	0.22	0.03	0.14	-0.04
0.08	0.51	0.22	0.20	0.05	0.13	0.00
0.01	0.07	0.07	0.04	0.01	0.05	0.00
0.43	3.34	2.86	1.93	0.33	1.80	0.21
0.03	0.26	0.21	0.22	0.04	0.16	0.03
0.06	0.36	0.21	0.27	0.04	0.16	0.02
0.10	0.70	0.35	0.34	0.10	0.26	0.03
0.04	0.26	0.19	0.33	0.03	0.16	0.03
0.06	0.42	0.21	0.36	0.08	0.16	0.02
0.10	0.67	0.36	0.48	0.14	0.28	0.02
0.12	0.66	0.52	0.58	0.10	0.40	0.04
0.01	0.18	0.13	0.12	0.01	0.13	0.01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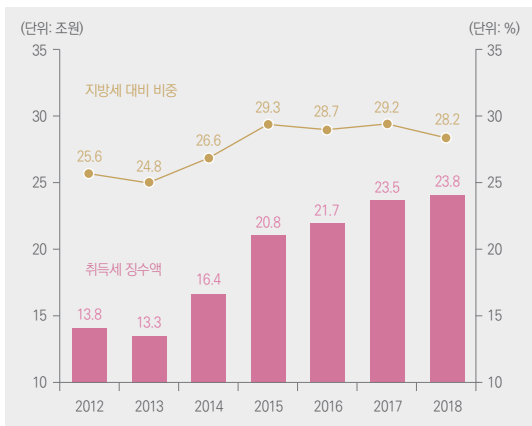
지방세

지방세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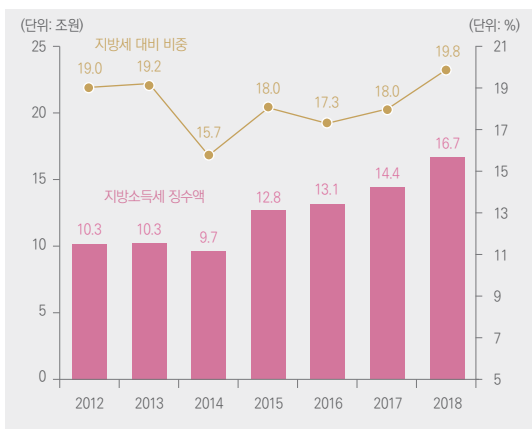
66 취득세

-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 취득에 대한 과세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 관련 과세대상과 통합
- 서울: 일반세율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1.0~3.0%
중과세율 4.4%, 8.0%, 8.4% 등
- 취득세는 2018년 23.8조원, 지방세 대비 28.2%



67 지방소득세

- 소득크기에 따른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으로 구분
- 세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득별 과세표준규정을 준용, 소득세율의 10% 수준 부과
- 지방소득세는 2018년 16.7조원, 지방세 대비 19.8%



68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

●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90%(시행령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80%(시행령 60%)

● 세율

- 주택
 - ① 별장: 과세표준액의 4%
 - ② 기타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0.4%

③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4%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골프장은 '09년말까지 2%)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초과금액의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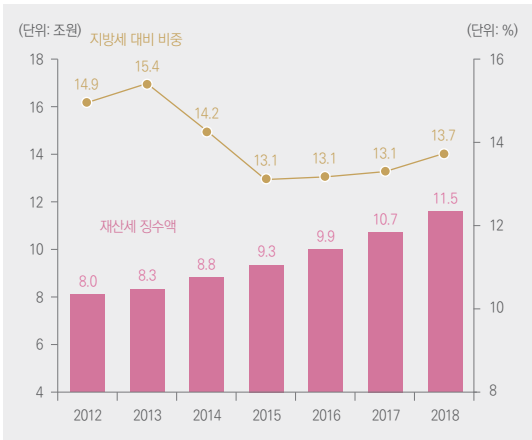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초과금액의 0.4%

③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이외 토지 : 과세표준액의 0.2%
 - 선박 : 고급 5%, 기타 선박 0.3%
 - 항공기 : 0.3%

● 재산세는 2018년 11.5조원, 지방세 대비 13.7%



69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 오염 등 부담금적 성격을 갖음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세율
 -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용도별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종류에 따라 승용·승합·화물·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율 차등화
 - 면세액(1대 기준)

- 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	-
2,500cc초과	24원	-	-

-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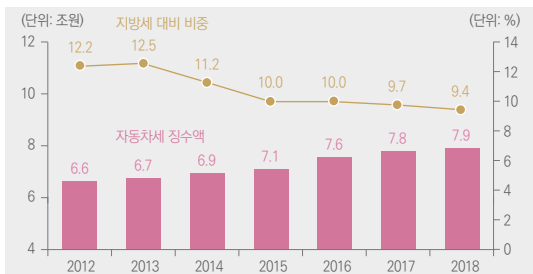
-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기타

	영업용	비영업용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 자동차세는 2018년 7.9조원, 지방세 대비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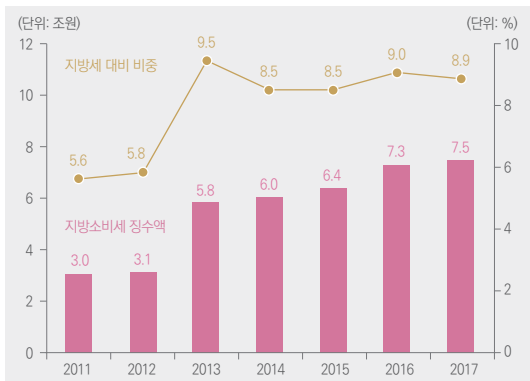


70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지방세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 거래에 부과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과세표준의 15%
 - 2010년 5%로 도입 후,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11%로 인상
 - 2019년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15%로 인상

- 취득세보전분(부가가치세액의 6%): 취득세 결손액에 따라 안분
 - ※ 수도권 지역으로 안분된 지방소비세액의 35%는 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재분배
- 나머지(부가가치세액의 5%분):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금액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소비지수에 따라 안분

● 지방소비세는 2018년 7.5조원, 지방세 대비 8.9%



71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 소비 행위 과세(반출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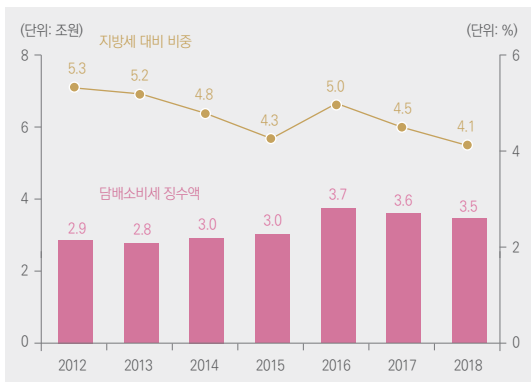
● 과세표준: 개수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ml)

● 세율

- 1종 쥘련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쥘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고형물 1그램당 88원(쥘련형 20개비당 897원)
- 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는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담배소비세는 2018년 3.5조원, 지방세 대비 4.1%

• 담배값 인상(15), 담배소비량 감소효과 부진 등에 따라 세수 증가



7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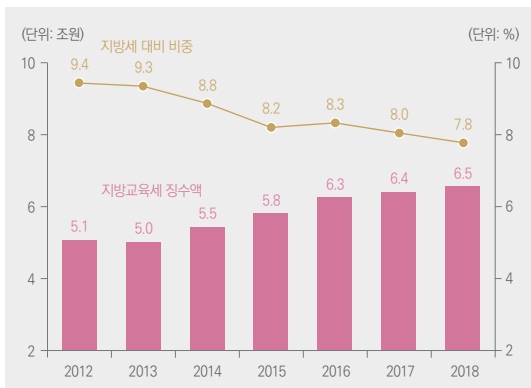
● 납세의무자

- 취득세(차량 취득세 제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등록면허세 제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균등분
- 재산세
-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 세율

- 취득세(표준세율 0.2%) 적용한 금액의 20%
- 등록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재산세액의 20%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시 25%)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지방교육세는 2018년 6.5조원, 지방세 대비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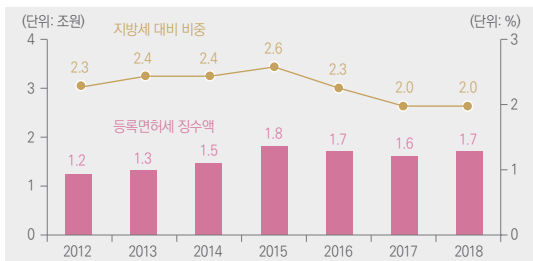
73 등록면허세

- 2011년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 인·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합

● 서울

구분	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유상 2%, 무상 1.5%, 상속 0.8% 소유권 보존: 0.8% 경매신청,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임차권: 0.2%
차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 경차 2%, 비승용차 3% 저당권 설정·이전 0.2%, 그 외 1.5만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0.2%, 기타 1만원
법인등기	설립·증자 0.4%, 비영리의 경우 0.2%, 본점이전 112,500원, 지점설치 40,200원
기타권리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담보권의 담보설정 0.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이전 1.8만원(상속 1.2만원)
면허 (제1종~제5종)	인구 50만 이상 시 등: 18,000원~67,500원 기타 시: 7,500원~45,000원 구: 4,500원~27,000원

- 등록면허세는 2018년 1.7조원, 지방세 대비 2.0%



74 주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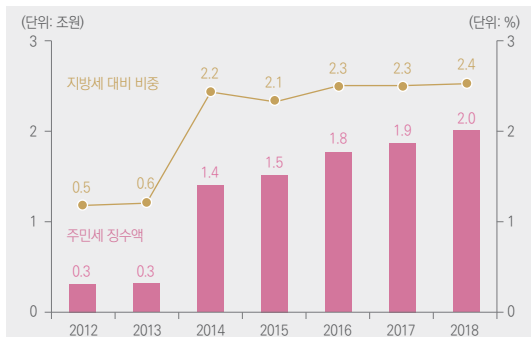
-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주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는 균등분과 환경개선·정비의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사업소에 과세되는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 서울

구분	내용
균등분	①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에 규정 ②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이상): 5만원 ③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 주민세는 2018년 2.0조원, 지방세 대비 2.4%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이관(‘14),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개인 균등분 1만원선 인상) 등으로 세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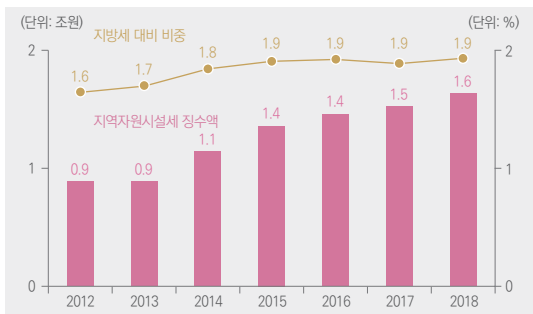


75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관광 등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소방 등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등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자원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세제곱미터당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부동산	600~6,400 만원	0.04%~0.12%

- 2018년 지역자원시설세 1.6조원, 지방세 대비 1.9%



76 레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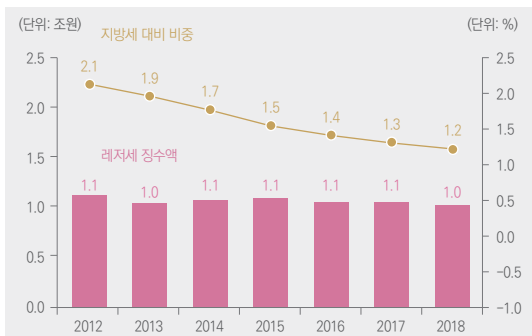
●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 영위 사업자에게 과세

● 과세대상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경기시행사(「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서울: 발매액의 10%

● 2018년 레저세 1.0조원, 지방세 대비 1.2%



Part 4

조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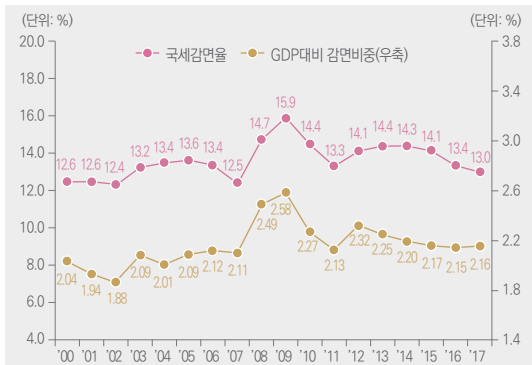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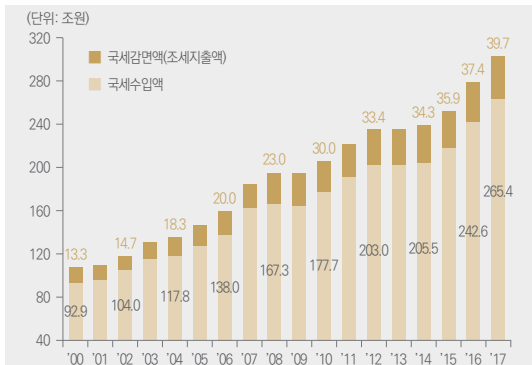
77 국세감면 현황

● 국세감면액 2016년 37.4조원, 2017년 39.7조원

- 국세감면율 : 2016년 13.4%에서 2017년 13.0%로 하락
- 명목GDP 대비 국세감면 비중 : 2016년 2.15%에서 2017년 2.16%로 상승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100

GDP대비 조세감면 비중(%) = (국세감면액/명목GDP)×100



78 국세 세목별 조세특례

- 국세 세목별 조세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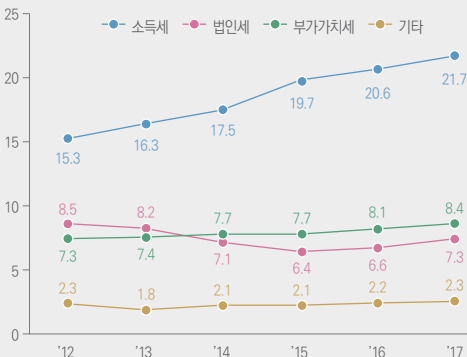
• 세목별 평균 감면율*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임

* {세목별감면액/(세목별조세수입액+세목별감면액)}×100

(단위 : 조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합계
조세수입액 (A)	75.1	59.2	67.1	64.1	265.4
조세감면액 (B)	21.7	7.3	8.4	2.3	39.7
조세감면 비중 [=B/A]	28.8	12.3	12.5	3.6	15.0
평균 감면율 [=B/(A+B)]	22.4	11.0	11.1	3.5	13.0

(단위: 조원)



● 국세 세목별 주요 조세특례 항목 현황

(2017년, 1천억원 초과 기준)

소득세: 23개 항목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2.8조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1.9조원)
3. 연금보험료 공제(1.8조원)
4. 자녀세액 공제(1.3조원)
5. 8년 이상 자경·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1.2조원)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비과세(1.2조원)
7. 근로장려금(1.2조원)
8. 교육비 특별공제(1.2조원)
9. 의료비 특별공제(1.1조원)
10. 연금계좌세액공제(1.0조원)
11.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0.9조원)
12. 자녀장려세제(0.6조원)
1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0.6조원)
14. 경로우대자 추가공제(0.4조원)
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0.4조원)
1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특별공제(0.4조원)
17.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0.3조원)
18. 장애인 추가공제(0.3조원)
1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0.2조원)
20. 국외 근로급여 비과세(0.2조원)
2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0.1조원)
2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0.1조원)
2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0.1조원)

(2017년, 1천억원 초과 기준)

법인세: 11개 항목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조원)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1조원)
3.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박 이전 법인세 감면(0.9조원)
4.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0.6조원)
5.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0.6조원)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세액공제(0.4조원)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0.2조원)
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0.2조원)
9.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0.2조원)
1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0.2조원)
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0.1조원)

(2017년, 1천억원 초과 기준)

부가가치세: 10개 항목

1.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5조원)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6조원)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6조원)
4.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2조원)
5.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6조원)
6.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0.6조원)
7.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2조원)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0.2조원)
9.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0.1조원)
10.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1조원)

79 예산분류별 조세특례

- 예산분류 기준으로 2019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이 높음

• 동 4개 분야의 조세지출금액 합계액이 39.7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금액 47.4조원 대비 83.8% 차지

예산분류	감면액(조원)	비중(%)
일반공공행정	2.6	(5.6)
공공질서및안전	-	-
외교·통일	0.001	(0.001)
국방	0.6	(1.4)
교육	1.5	(3.2)
문화및관광	0.02	(0.03)
환경	0.9	(2.0)
사회복지	15.9	(33.5)
보건	5.9	(12.5)
농림수산	5.7	(12.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2	(25.8)
교통및물류	0.5	(1.1)
통신	-	-
국토및지역개발	1.5	(3.1)
과학기술	0.01	(0.01)
예비비	-	-
합계	47.4	(100)

자료 : 대한민국 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 4대 주요 조세지출 분야의 조세지출 항목 사례

사회복지 (15.9조원)	• 근로장려금(4조 9,017억원)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2조 1,414억원) • 자녀세액공제(1조 3,544억원) • 연금계좌세액공제(1조 1,600억원) • 개인기부금세액공제(9,835억원) • 자녀장려금(8,570억원) 등
보건 (5.9조원)	•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3조 2,279억원) • 의료비 세액공제(1조 2,510억원)
농림수산 (5.7조원)	•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 7,065억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조 5,327억원)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조 1,973억원) •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5,146억원) •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3,104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2조원)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조 8,494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조 5,760억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4,608억원)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 8,844억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618억원) 등

주 : ()의 감면금액은 2019년 전망 기준임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80 조세특례평가제도

-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2012년 성과관리 도입 후 2015년부터 조세특례평가제도를 시행, 평가결과를 행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토록 함
 - 소관부처의 조세지출 자율평가 결과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
 - 2015년부터 조세특례평가제도를 시행, 매해 외부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 도입안 '사전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짐

- 2018년 조세특례평가
: 총 16건(신규안 1건, 일몰도래 15건)

(단위: 억원)

신규 조세특례 도입안 평가(1건)			
1. 지방 신·증설기업 법인세 감면(산업부 건의)	1,807	-	미도입
일몰도래 조세특례 평가(15건)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8,537	공제대상 추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재설계
2.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16,271	우대공제율 적용연장 공제한도 인상	재설계
3.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1,549	-	단순 연장
4.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과세특례	5,521	준조합원 저율분리과세 전환	재설계

5.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6,163	-	단순연장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720	장애인 범위 확대	재설계
7.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230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6% → 7%)	재설계
8.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486	-	단순연장
9.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1,493	암호화폐 관련 업종 적용배제	재설계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감	1,887	-	단순연장
11. R&D비용 세액공제	25,468	-	단순연장
12. R&D설비투자 세액공제	1,530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6% → 7%)	재설계
1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71	-	단순연장
14.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583	위기지역 투자공제율 인상 (중소/중견 3/1~2 → 7/3%)	재설계
15.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691	-	단순연장

주 : '예비타당성 평가' 감면액은 산업부 추정자료, '심층평가' 감면액은 2017년 실적치임
 자료 : 대한민국 정부, 「조세특례 심층평가(Ⅰ~Ⅻ)」, 2018. 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Ⅰ)」, 2018. 9.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81 조세지출 관리규정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국가재정법 제88조)

- 국세감면율(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0.5%p)의 법정한도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100

최저한세 및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32조의2, 제133조)

- 법인세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①)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100~1,000억원/1,000억원 초과
10%/12%/17% 적용
* 단, 중소기업 7%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②)
: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초과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액은 산출세액의
35%/45%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2조의2)
: 소득세의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 중 2,500만원 초과분 배제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3조)
: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1억원, 증여세 직전 5년간 통산 1억원 한도

조세특례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투자자산 세액공제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R&D설비투자세액공제(제1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2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 감면제도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④)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감면(제63조) 등 감면제도 대상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30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법 제130조)

82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지방세 비과세·감면 : 2017년 13.4조원, 감면율 16.5%

· 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 조례	조세 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134,109 (100.0)	74,792	53,538	2,352	3,215	213
취득세	50,273 (37.5)	10,514	36,878	1,948	720	213
등록면허세	1,679 (1.3)	93	1,570	15	0	-
레저세	142 (0.1)	-	-	142	-	-
지역자원시설세	1,336 (1.0)	755	580	1	-	-
지방교육세	1 (0.0)	-	-	1	-	-
주민세	1,832 (1.4)	1,043	788	2	-	0
지방소득세	3 (0.0)	-	0	-	3	0
재산세	54,222 (40.4)	41,942	11,982	195	103	0
자동차세	4,961 (3.7)	784	1,740	48	2,389	0
담배소비세	19,662 (14.7)	19,662	-	-	-	-
도시계획세	0	-	-	-	-	-

주 : 1) 지방세 조세감면은 2018년 잠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2017년 실적치 기준으로 자료 정리

2) ()은 전체 지방세 감면액 중 해당 세목의 비중값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18 지방세통계연감」

● 2013년 23.0% 이후 지방세 감면율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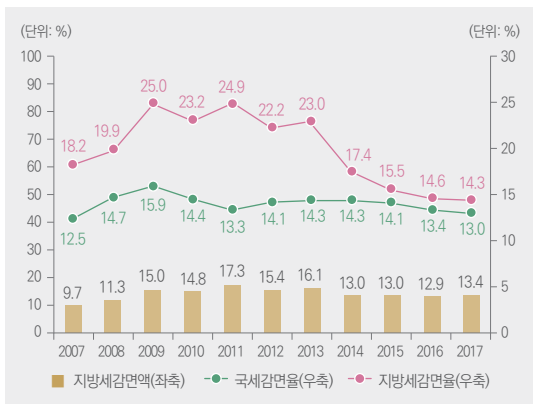
- 지방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의 격차가 작아지고 있으나, 2017년 국세 감면율 13.0% 대비 1.3%p 높은 수준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징수액	53.8	61.7	71.0	75.5	80.4
감면액	16.1	13.0	13.0	12.9	13.4
감면율	23.0	17.4	15.5	14.6	14.3

주: 감면율(%)=비과세·감면액/(징수액+비과세·감면액)×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83 주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 최근 지방세 감면실적은 2017년 기준값임

(단위: 억원)

항목	감면액
1. 매매용 수출용 중고차 등에 대한 감면	7,643
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837
3.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5,310
4. 학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4,407
5.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3,349
6.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3,165
7.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2,857
8.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959
9.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589
1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518
합계	39,526 (73.8%)

주 : ()는 전체 지방세 감면액 대비 비중값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18 지방세통계연감」

84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54,286 (100.0)	160,760 (100.0)	130,029 (100.0)	130,123 (100.0)	128,798 (100.0)	134,109 (100.0)
재산세	45,313 (29.4)	47,080 (29.3)	48,198 (37.1)	48,417 (37.2)	51,689 (40.1)	54,222 (40.4)
취득세	84,518 (54.8)	93,003 (57.9)	56,942 (43.8)	53,054 (40.8)	48,667 (37.8)	50,273 (37.5)
담배소비세	13,704 (8.9)	9,894 (6.2)	12,231 (9.4)	16,642 (12.8)	18,801 (14.6)	19,662 (14.7)
자동차세	6,499 (4.2)	6,624 (4.1)	6,779 (5.2)	5,260 (4.0)	4,874 (3.8)	4,961 (3.7)
주민세	408 (0.3)	438 (0.3)	1,993 (1.5)	1,862 (1.4)	1,894 (1.5)	1,832 (1.4)
등록면허세	1,141 (0.7)	843 (0.5)	2,487 (1.9)	3,524 (2.7)	1,422 (1.1)	1,679 (1.3)
지역자원 시설세	1,074 (0.7)	1,107 (0.7)	1,218 (0.9)	1,234 (0.9)	1,278 (1.0)	1,336 (1.0)
레저세	58 (0.0)	123 (0.1)	109 (0.1)	121 (0.1)	168 (0.1)	142 (0.1)
지방소득세	1,569	1,648	66 (0.1)	7 (0.0)	4 (0.0)	3 (0.0)
지방교육세	-	-	7 (0.0)	2 (0.0)	1 (0.0)	1 (0.0)
도시계획세	2 (0.0)	-	-	-	-	-

주: ()는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85 지방세 감면 관리 규정

●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 지방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7
: ('17년까지) 15.0% 목표
→ ('18년) '17년 감면율+0.5%
→ ('19년) '17~'18년 평균감면율+0.5%
→ ('20년 이후)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율+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조문 등에서 100% 감면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85%의 감면율을 적용 (최소납부세제, '15년 도입)
※ 단,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 장애인용 자동차 등 법으로 정한 특례제도 예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지방세 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매년 2월말일)
-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 제출(매년 4.20.)
- 연간감면액 100억원 이상의 신규 지방세 특례 도입에 대한 조세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등

●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행정서비스 공급재원인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등은 감면배제 세목으로 설정

Part 4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2019년 일몰도래항목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감면액 ('19년 전망)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21,716
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8의 2	3,413
3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28의 3	1,140
4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09의 2	1,064
5	학교법인·국립대학 병원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74 ①	979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 ① 6	974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 23 ⑩	538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322
9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① 5	238
10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조특법 §8의 3	219
11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 4	199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85의 6	183
1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30의 2	180
1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조특법 §107의 3	129
15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09 ⑦	81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감면액 ('19년 전망)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6	66
1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 25	48
18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조특법 §107의 2	15
1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 29 조특법 §106 ② 20	9
20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6의 7	7
21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법 §118 ① 3	6
22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조특법 §74 ④	4
23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법 §140	2
24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 18	1
25	내국법인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3의 2	0
2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 6	0
2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83	0
28	공모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7의 8	0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1의 22	0
30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법 §95 ① 1,2	0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26의2)

신설일자	1999. 9. 1.				
지원목적	과세표준 양성화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지원내용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소득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min(300만원, 총급여20%)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은 각 100만원 추가 - (일몰기한) 2019.12.31.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17,889	18,444	18,537	20,400	21,716

[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88의2)

신설일자	2000. 10. 21.				
지원목적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지원내용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 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3,647	3,742	3,149	3,206	3,413

[3]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8의3)

신설일자	2018. 12. 24.				
지원목적	기업의 혁신성장 투자 지원				
지원내용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가속상각 허용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1,140

[4]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09의2)

신설일자	2019. 1. 1.				
지원목적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70% 감면(1대당 한도 100만원)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573	-	1,064

[5] 학교법인·국립대학 병원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74 ①)

신설일자	1976. 12. 22.				
지원목적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활성화				
지원내용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732	798	819	1,156	979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5 ① 6)

신설일자	1981. 12. 31.				
지원목적	생산성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고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1,787	4,873	3,796	3,869	974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3 ⑩)

신설일자	2011. 12. 31.				
지원목적	농협 구조조정 지원				
지원내용	①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②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이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760	415	480	515	538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87 ②)

신설일자	2010. 1. 1.				
지원목적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 지원				
지원내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과세기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198	259	281	302	322

[9]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5 ① 5)

신설일자	1981. 12. 31.				
지원목적	사업자의 시설투자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지원내용	안전설비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116	174.27	139	284	238

[10]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8의3)

신설일자	2010. 12. 27.				
지원목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지원내용	내국법인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신용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39	83	94	152	219

[11]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4)

신설일자	2007. 12. 31.				
지원목적	글로벌 수준의 시설 구축 유도를 통해 국내 제약사 의약품의 품질 확보 및 수출 증대				
지원내용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 투자금액 1% 세액공제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136	160	219	173	199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5의6)

신설일자	2007. 12. 31.				
지원목적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내용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43	69	98	174	183

[1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30의2)

신설일자	2008. 9. 26.				
지원목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4	15	25	148	180

[1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107의3)

신설일자	2015.12.15.				
지원목적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지원내용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제출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 가치세 환급 ※ 2016년 4월부터 실행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	91	109	123	129

[15]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09 ⑦)

신설일자	2016. 12. 20.				
지원목적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확대 지원				
지원내용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1대당 한도 400만원)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	77	81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6)

신설일자	2014. 1. 1.				
지원목적	전월세 수급불안 해소 및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지원내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0%감면(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75%)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7	12	25	62	66

[1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25)

신설일자	2011. 12. 31.				
지원목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가안정 유도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1/1000(공급자), 2/1000(공급받는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34	113	137	46	48

[18]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107의2)

신설일자	2017. 12. 19.				
지원목적	관광객 유치 지원				
지원내용	숙박용역 공급확인서 제출시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	15

[1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9, §106 ② 20)

신설일자	2017. 12. 19.				
지원목적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지원내용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	9

[20]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6의7)

신설일자	2014. 1. 1.				
지원목적	금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금거래 양성화 지원				
지원내용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공제 허용,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0.73	3.23	7	6	7

[21]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118 ① 3)

신설일자	1979. 12. 28.				
지원목적	국내 보급률 조기 달성 및 시장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국산화율 제고, 업계의 글로벌 원가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용·이용기자재에 대해 관세 50% 경감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2.27	3	2	6	6

[22]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74 ④)

신설일자	2010. 12. 27.				
지원목적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지원내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2.81	2	6	3	4

[23]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40)

신설일자	1970. 1. 1.				
지원목적	국내의 석유개발 기술 및 자본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 특히 해외 E&P 석유회사의 유치를 통해 국내대륙붕 해저광물자원개발 활성화 제고				
지원내용	부가가치세·관세 등 면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965	179	344	2	2

[24]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18)

신설일자	2008. 12. 26.				
지원목적	산업체가 현장 중심 인력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				
지원내용	교육비용·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0.36	1.58	1	1	1

[25] 내국법인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3의2)

신설일자	2016. 12. 20.				
지원목적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지원				
지원내용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0	0	0

[2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5의6)

신설일자	2016. 12. 20.				
지원목적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지원				
지원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 세액공제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0	0	0

[2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83)

신설일자	2016. 12. 20.				
지원목적	문화시설 이전 지원				
지원내용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을 양도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허용 * 신규시설 개관일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0	0	0

[28] 공모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97의8)

신설일자	2016. 12. 20.				
지원목적	현물출자를 통한 공모부동산 투자회사의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 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신설	0	0	0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22)

신설일자	2011. 12. 31.				
지원목적	첨단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 기업들을 유치				
지원내용	해당 지역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0.05	0.17	0.15	0	0

[30]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95 ① 1,2)

신설일자	1993. 12. 31.				
지원목적	중장기적인 친환경산업의성장잠재력 증진				
지원내용	오염물질·폐기물의 배출방지·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감면실적 (억원)	2015	2016	2017	2018 ^e	2019 ^e
	0.24	0.07	0	0	0

부록: 조세용어 해설¹⁾

7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가처분소득	개인이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각사업연도소득금액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과세소득금액(익금-손금)
간이과세제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
간이세액표	매월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대표적인 세목 부가가치세
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의 자회사에 외국정부로부터 부과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간주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간주하다', '의제하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
간주공급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
간편장부신고자	중·소규모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간편장부라 하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
감가상각비	토지를 제외한 유형·무형의 고정자산이 사용 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되는 금액
감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과세해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개별소비세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특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1) 조세용어해설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세무용어사전」 및 기타 문헌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거래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함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결산조정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와 같이 장부상에 계상하고 익금·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
결손금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하며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
결손금의 소급공제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결손금의 이월공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결손처분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
결정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경정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경정청구권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고용증대세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 기업은 2년간)해 주는 세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하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고정사업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 가치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공급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
공매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세가격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과세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함.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연도'라고 규정
과세기준일	해당 재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기준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과세단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
과세대상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음
과세물건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
과세소득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
과세소득 열거주의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
과세소득 포괄주의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

과세이연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물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
과세처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과소자본세제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과점주주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함
관세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교육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신설하여 10년간(1994 ~ 2003)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과세 시한을 2021년까지 연장
국경세조정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 평형세가 과세됨.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임
국내원천소득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국제거래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

국세우선징수권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함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수입금액(급여총액)에서 필요경비적 성질의 각종 공제를 한 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월정급여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함
근로장려세제 (EITC)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금지금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
기간과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파악된 유량(流量, flow)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기본관세	법률에 의해 장기간 적용되는 관세
기본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
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
기업회계기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기장의무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에 대한 확인과 계산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사업활동에 관한 거래행위등의내용을 기재하도록세법에서 규정.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장부는 비치해야 함

기장세액공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제도라 함
기준경비율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
기준시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기타 토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
기초공제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대상의 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것
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긴급관세	특정상품이 자국에 급속도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긴급히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함

L

납기전징수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납부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
납부세액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납세의무자	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납세의무의 승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함.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 시키고자 하는 것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납세자보호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납세지	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
납세보증인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내국법인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
내국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 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누진세율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 구조를 말함.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율과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초과누진율이 있음
누적효과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된 세액분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



다국적기업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을 조작하거나 세금피난처(稅金避難處: taxhaven)나 저세율국(低稅率國)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법인세법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

다단계거래세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 부가가치세가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임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소비세.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
담세력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
담세자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
대리납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용역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제도
대손충당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대비 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충당금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동족회사	친족이나 사영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

ㄴ

례저세	경마, 경륜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	--

로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 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
리스계약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중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
매출세액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면세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면세사업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
면세재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
명목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
목적세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무제한납세의무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
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
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
미납부가산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미등기양도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의 당해 자산으로, 주로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70%)이 적용됨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
미성년자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미실현이익	아직 판매되지 않아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의 이익. 물가상승시 보유자산의 평가이익 등이 해당함

ㄴ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배당소득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배우자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법정납부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세법에서 규정
법정상속분	법정 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増關稅)

보세구역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는 장소로서 일정한 내국물품도 보세구역에 한하여 저장할 수 있음. 외국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 받고 여기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내에 옮겨져 내국물품이 된 때에야 과세함
보세제도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
보통징수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정보험료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연금보험료공제는 기타소득공제로 종합 소득금액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대별됨
본선인도(FOB)	약속된 화물을 구매자측이 부른 선박에 싣고 본선에서의 화물 인도완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상운임이나 선적이후의 비용은 구매자측이 부담함 (free on board)
본세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본래의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
부가가치율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부가세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이 있음
부과과세제도	조세의 확정 권한을 과세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고 있음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 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

납부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
분류소득세제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
비과세소득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과세제외소득
비사업용토지	나대지·부채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비영리법인	학술·종교·자선·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人

사내유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함. 사내유보는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의의 사내유보가 있는데 전자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 적립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음
사업소득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함
산림소득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음
산출세액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상속세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금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재된 계산서를 말하며 일종의 세금영수증임

세무조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
세액감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
세액공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세율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 :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원칙
소득공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 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
손금불산입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조세 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
손금산입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치로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즉, 자본환급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니며, 영업거래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닌 것을 손비로 인정하는) 항목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신고납세제도	납세의무자 납세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 즉 납세의무 확정권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를 말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소정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신고조정	결산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으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
실효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서, 각종 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의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률을 말하며,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심사청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국세기본법상)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
심판청구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됨

○

양도가액	일반적으로는 토지 등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가격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자산소유자에 귀속되는 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기회로 과세함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주식(기타 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
양도소득금액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대주주의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양도차익	소득세법 및 특별부가세(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
양허관세	다자간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업무무관경비	기업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음
연결납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이들 관계회사 그룹(affiliated group)에 대하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합쳐서 계산하여 실질적 조세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역진세율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
연대납세의무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국제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
연부연납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인데,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
영세율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증가세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종량세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

예납세액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함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CIF)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 하는 가격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
유산과세방식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유산취득과세방식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조세부담원칙
응의부담의 원칙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세부담원칙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하는 세액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이월공제	조세감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저한세(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한 것
이의신청	행정작용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처분청에 대해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

이전가격세제	기업이 모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
이중과세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임. 예를 들면,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등이 있음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
익금산입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또는 요소)이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인지세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
일괄공제	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익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 공제라 함
일감 몰아주기	모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는 것
일반소비세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

ㄷ

자가공급	간주공급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를 말함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

자경농지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함.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음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자산소득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소득종류 중 소유자산의 운용으로부터 생긴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함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상호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나 수출입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역외 제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각국이 각각 독자의 관세, 기타 통상규칙을 적용하는 제도
자회사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므로,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함
잠정관세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의 관세로, 잠정관세가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됨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
재정환율	한 나라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
절세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
점감구간	근로장려세제에서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
점증구간	근로장려세제에서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이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는 구간
접대비	기업활동비용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과 같은 항목의 지출금을 뜻함
정상가격	생산원가에 적당한 평균이윤을 부가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가격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제척기간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
제한세율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을 규정한 것을 말함
조정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公權力體)가 그의 경비 충당의 재정조달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금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님
조세부담률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
조세조약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 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立法上的 租稅公平), 조세법을 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
조세회피처 (tax haven)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 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조세회피행위	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
종가세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종량세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조세
주민세	지방세의 하나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주세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 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중간예납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정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여재산공제	친족 간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
지방소득세	그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지방소비세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자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5%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지점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일정한 부가세(sur tax)
지정기부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징수권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조세·수수료·과료·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함
징수유예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징수의무자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

ㄷ

참가압류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交付請求)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
청산소득	법인이 사업수행을 종결짓고, 그 시점에서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출자자에게 반제할 것을 반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을 청산소득이라고 함
체납처분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
초과반환금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
총수입금액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소비대차·자본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
충당금	아직 지출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연도의 부담이 될 금액에 대한 준비로서 추정한 금액을 불특정형태의 자산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

최저한세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취득가액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의 대가 또는 취득의 대가로 의제하는 것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

E

탄력관세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산업 보호나 물가의 안정 내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정관세율을 증감·변경할 수 있는 관세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
탈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
퇴직급여충당금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
퇴직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의 총칭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소득 특별공제를 한 금액에서 근무 연한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특별징수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 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
특수관계인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용어
특혜관세	어떤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하여 통상관계를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일반 수입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II

파생금융상품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
---------------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성실사업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7만원)에게 항목별 세액 공제 대신 연간 12만원을 세액공제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표준소득율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추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해놓은 기준. 회계장부를 작성 했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 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됨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 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함
피합병법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법인
필요경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

승

합산과세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하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 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하는 제도
할당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
협정세율	1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상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
확정신고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조세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납세신고임
환가처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 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자산을 현금화 하는 행위

환급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 주는 행위로 환부라고도 말함.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함
환수효과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인한 면세액이 최종 거래단계에 모두 환수되어 종전의 영세율 효과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또는 취소효과)라 함
환지처분	토지개발·개발이나 도시계획 등의 사업 결과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이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처분
회계공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환경을 귀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이 되는 환경공준(環境公準)으로서 회계이론을 연역적(演繹的)으로 형성하고 전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본명제 또는 전제조건
1세대 1주택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일정기간(1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말함

이 책자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8.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연락처: 추계세제총괄과 (Tel) 02-788-3776 (E-mail) etcd@nabo.go.kr

2019 조세수첩

발간일 2019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6

ISBN 978-89-6073-174-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한 미래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72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1638-10